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남양주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목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6
II 	남양주시 사회보장(복지) 현황분석	7
	1. 일반현황	9
	2. 영역별 사회보장 욕구	16
	3. 사회보장지표 현황 및 변화	48
	4. 복지재정 특성	55
III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방안	65
	1. 복지기준선의 의미와 필요성	67
	2.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전략 및 방법	73
	3. 주요영역별 복지기준선	80
IV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활용방안	103
	참고문헌	111
	부록	113

Ⅰ 표 차례

〈표 I-1〉 남양주시 사회보장 영역별 만족도	5
〈표 II-1〉 남양주시 읍면동별 응답가구 현황	19
〈표 II-2〉 남양주시 응답자 가구특성별 현황	20
〈표 II-3〉 남양주시 응답가구 유형(세분화)별 현황	21
〈표 II-4〉 남양주시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 및 필요성 정도	23
〈표 II-5〉 남양주시 사회보장영역별 지원·서비스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26
〈표 II-6〉 남양주시 가구유형별 경상소득	29
〈표 II-7〉 가구 총 소득(월평균)	30
〈표 II-8〉 가구 총 생활비(월평균)	31
〈표 II-9〉 최소 생활비	32
〈표 II-10〉 적정 생활비	32
〈표 II-11〉 경제적 이유로 경험한 부정적 경험	34
〈표 II-12〉 아동돌봄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35
〈표 II-13〉 돌봄 노인 관련 어려움	36
〈표 II-14〉 돌봄 노인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37
〈표 II-15〉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38
〈표 II-16〉 장애인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39
〈표 II-17〉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40
〈표 II-18〉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41
〈표 II-19〉 교육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42
〈표 II-20〉 주거 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43
〈표 II-21〉 주거 내부환경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44
〈표 II-22〉 주거 여건	45
〈표 II-23〉 주거 여건(계속)	45
〈표 II-24〉 삶 및 지역사회, 거주지역 만족도	46
〈표 II-25〉 지역간 불균형	47
〈표 II-26〉 아동돌봄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49
〈표 II-27〉 노인돌봄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50
〈표 II-28〉 장애인돌봄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51
〈표 II-29〉 건강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52
〈표 II-30〉 건강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53

〈표 II-31〉 주거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53
〈표 II-32〉 남양주시 분야 및 부문별 예산 변화(2015, 2020년)	56
〈표 II-33〉 남양주시 사회복지분야 세부부문별 사업수 및 예산	58
〈표 II-34〉 남양주시 사회복지분야 세부부문별 자체복지사업 목록	59
〈표 II-35〉 남양주시 사회복지분야 단위사업유형별 정책현신도(예산집중도)	63
〈표 III-1〉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비교	70
〈표 III-2〉 주요 복지기준선 설정 사례	72
〈표 III-3〉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영역별 정책목표 및 주요지표	79
〈표 III-4〉 상대빈곤율, 사각지대 비율	80
〈표 III-5〉 아동돌봄 관련 시설 이용만족도	83
〈표 III-6〉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86
〈표 III-7〉 장애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89
〈표 III-8〉 우울 경험률,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93
〈표 III-9〉 우울 경험률,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연령 및 성별 차이	94
〈표 III-10〉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 인지도	96
〈표 III-11〉 남양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중요도	97
〈표 III-12〉 경기도 주거환경 어려움 순위	99
〈표 III-4〉 남양주시 주거환경 어려움 정도	100
〈표 IV-1〉 남양주시 권역별 우선·중점 추진영역(예시)	107
〈표 IV-2〉 중앙정부, 경기도, 남양주시 중위소득 비교	108
〈표 IV-3〉 남양주시 권역별/중위소득구간별 가구수 및 비율	108
〈표 IV-4〉 남양주시 중위소득구간별/가구원수별 소득기준	109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Ⅱ-1〉 남양주시 위치 및 주변지역	10
〈그림 Ⅱ-2〉 남양주시 4권역 지도	12
〈그림 Ⅱ-3〉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13
〈그림 Ⅱ-4〉 읍면동별 인구 비율	14
〈그림 Ⅱ-5〉 읍면동별 노인인구 비율	14
〈그림 Ⅱ-6〉 읍면동별 아동인구 비율	14
〈그림 Ⅱ-7〉 읍면동별 기초연금 수급 인구 비율	15
〈그림 Ⅱ-8〉 장애인연금 수급인구 비율	15
〈그림 Ⅱ-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인구 비율	16
〈그림 Ⅱ-10〉 긴급복지 수급인구 비율	16
〈그림 Ⅱ-11〉 읍면동별 한부모가족 인구 비율	16
〈그림 Ⅱ-12〉 남양주시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 및 필요성	22
〈그림 Ⅱ-13〉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이용률 및 향후 이용 의향	26
〈그림 Ⅲ-1〉 복지기준선 수립 근거	68
〈그림 Ⅲ-2〉 복지기준선의 발전과정	69
〈그림 Ⅲ-3〉 복지분권과 복지기준선	75
〈그림 Ⅲ-4〉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기본 방향	76
〈그림 Ⅲ-5〉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목표, 영역, 선정기준	78
〈그림 Ⅲ-6〉 상대빈곤율 기준선	81
〈그림 Ⅲ-7〉 복지사각지대 비율 기준선	82
〈그림 Ⅲ-8〉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기준선	84
〈그림 Ⅲ-9〉 드림스타트 이용 만족도 기준선	85
〈그림 Ⅲ-10〉 보육·유아교육시설 만족도 기준선	85
〈그림 Ⅲ-11〉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기준선	87
〈그림 Ⅲ-12〉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기준선	87
〈그림 Ⅲ-13〉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기준선	88
〈그림 Ⅲ-14〉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기준선	88
〈그림 Ⅲ-15〉 장애인돌봄 이용률 기준선	90
〈그림 Ⅲ-16〉 장애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 기준선	90
〈그림 Ⅲ-17〉 장애인 거주시설 기준선	91
〈그림 Ⅲ-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이용자 수 기준선	91

〈그림 Ⅲ-19〉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기준선	92
〈그림 Ⅲ-20〉 우울감 경험률	95
〈그림 Ⅲ-21〉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기준선	95
〈그림 Ⅲ-22〉 비만율 기준선	95
〈그림 Ⅲ-23〉 1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기준선	98
〈그림 Ⅲ-24〉 1만명당 프로그램 수 기준선	98
〈그림 Ⅲ-25〉 1만명당 교강사 수 기준선	98
〈그림 Ⅲ-26〉 평생학습 참여율 기준선	98
〈그림 Ⅲ-27〉 주거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기준선	101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복지기준선의 중요성 부각

- 개발연대를 지난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과거 한국의 개발연대에서는 국가의 발전이 곧 국민의 발전(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레토릭이 가능하였으나, 경제개발의 이면에서 억압받던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 서구 유럽의 경우에도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기틀이 마련됨과 함께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하였음
 - 복지국가 이행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공적 복지제도를 통해 주요 생활영역에서 일정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의 개념을 통해 발전
- 한국의 경우에도 국민최저선 관련 다양한 정책이 있으나,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만으로는 남양주시민의 복지욕구(needs)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전국적 평균을 기반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충성의 원리와 함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 이미 국내에서도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드러난 성과는 미흡한 편
 - 복지기준선 연구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서울시민 복지기준(2012. 10)” 마련

- 이후 부산(2015), 광주(2015), 대전(2016), 세종시(2015), 전북 완주군(2016), 경기(2016)에서 복지기준선 관련 연구 추진

- 복지기준선은 기존 복지정책의 방식인 단순한 소득지원을 통한 단차원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배제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는 적정한 수준의 욕구를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최소한의 기준은 중앙정부가, 적정수준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제도적 관점에서(기본원리)에 근거
 - 또한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복지분권)을 공약사항으로 이행을 계획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 차원에서 복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통적 복지의 영역을 넘어 사회보장의 영역을 포괄해야 할 것임
- 이에 기존 복지기준선의 설정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남양주시에 맞는 ‘남양주시민 복지기준선’에 대한 설정 및 시행이 필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제 45~48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 남양주시민을 위한 복지기준선의 설정과 이행노력을 통해 시민복지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

□ 남양주 복지기준선의 필요성

- 남양주시는 인구 72.4만명(‘21.06. 기준)의 16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대도시¹⁾로서, 인구·복지자원·사회보장욕구 등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남양주시의 인구는 2011년 기준 57.8만명에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72.4만명으로 지난 10년간 25%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는 성장하는 도시임
 - 이러한 인구성장은 신도시 개발과 서울지역으로의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기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구도심과 신도심의 지역별 편차도 예견되는 상황임
 - 복지자원의 경우에도 신도심을 중심으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구성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사회보장욕구도 차이가 나타남(경기복지재단, 2019)
 - 따라서 남양주시 내 16개 읍·면·동별 복지의 수준 및 상황은 인구·경제·행정·지역적

1)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과 계폐청구(제15조), 주민의 감사청구(제16조), 행정특례(제10장)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전국단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의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

- 현 시점에서 남양주시는 향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중해야 할 복지영역과 추진 전략과제의 마련이 필요하며, 복지기준선은 복지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음
 -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 크게 ①남양주 시민을 위한 복지기준선, ②남양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 ③남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기준선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 본 연구에서는 ①과 ②를 중심으로 향후 남양주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표 I-1〉 남양주시 사회보장 영역별 만족도

(단위: 점)(100점 만점)

구분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현재 삶의 질	다른 지역 대비 거주지역 만족도
경기도 평균		50.4	59.8	61.5
남양주 평균		49.1	56.4	58.9
	북부	50.0	59.3	58.8
	서부	48.0	55.6	60.0
	남부	45.7	55.8	60.4
	동부	50.2	54.0	57.5

자료: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 남양주 복지기준선 영역의 구분

- 복지기준선의 영역은 기본생활 유지, 격차 발생 영역, 시민의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례 등을 참고하여 5대 분야(7개 세부영역)을 설정²⁾
 - 소득, 건강, 주거,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 등의 영역은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2) 기존 연구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7대 분야(9개 세부영역)는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건강, 교육, 소득 및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환경 및 안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복지영역을 중심으로 5대분야(7개 세부영역)으로 한정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

- 복지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은 생활수준, 건강, 복지인프라, 재정 등이 해당
- 시민의 복지수요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결과 등 실증데이터에 기반하여 설정

2. 연구방법

- 문헌검토 : 복지기준선 및 관련 문헌검토
- 통계분석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2018), 남양주시 사회조사(2019) 등 관련 통계자료 2차 분석
- 자문회의 : 학계 전문가, 실무자 등

II

남양주시 사회보장(복지) 현황

1. 일반현황
2. 영역별 사회보장 욕구
3. 사회보장지표 현황 및 변화
4. 복지재정 특성

II 남양주시 사회보장(복지)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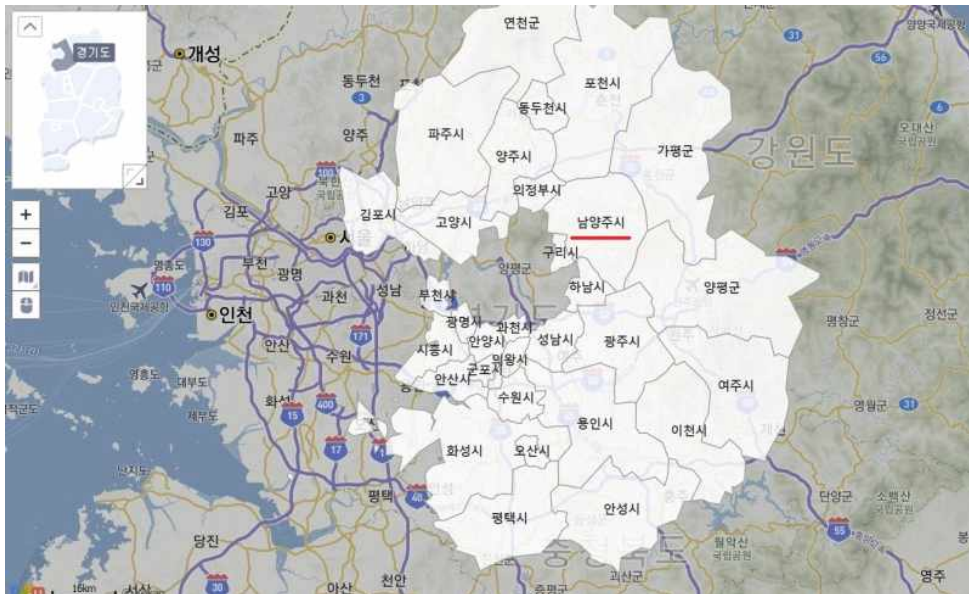
1) 읍면동 및 권역, 재정상황

□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 남양주시는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양평, 가평, 의정부, 구리, 하남, 광주, 포천과 인접해 있어 수도권 동북부 거점지역
 - 남양주는 1980년 양주에서 분리되어 만들어졌으며, 1986년 구리읍이 분리되고, 1989년에는 미금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었다가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
 - 지리적 위치는 수도권 동북부 관문지역에 위치하여, 경춘축, 포천축, 양평·가평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지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
- 남양주시 행정구역은 6읍(1출장소), 3면, 7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수로 는 도내 7위(약 73만명), 면적은 도내 11위(460.1km²)
 - 남양주시는 1980년 이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6개 읍, 3개 면, 7개 동을 관할하게 됨
 -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에 의하여 구리읍(7개 리), 미금읍(10개 리), 별내면(6개 리), 진접면(8개 리), 진건면(9개 리), 수동면(7개 리), 화도면(10개 리), 와부면(11개 리)의 2읍·6면·68리를 갈라 남양주군이 새로 설치
 - 1980년 12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0050호에 의하여 와부면을 읍으로 승격하여 3읍·5면이 되고, 1986년 1월 1일에는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
 - 1986년에는 조안면이 새로 생기고 1989년 1월 1일 미금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

- 진접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퇴계원 출장소가 퇴계원면으로 승격하였으며, 1991년에는 화도면이 읍으로 승격
- 이후 19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가 신설
- 2001년 9월 진건면과 오남면이 각각 진건읍과 오남읍으로 승격하였고, 2001년 12월 별내면 덕송리, 화접리를 통합하여 별내동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12월 도농동과 지금동의 명칭을 각각 다산1동과 다산2동으로 변경
- 2019년 10월 퇴계원면이 퇴계원읍으로 승격하여 현재 남양주시는 와부읍·진접읍·화도읍·진건읍·오남읍·퇴계원읍의 6개 읍, 별내면·수동면·조안면의 3개 면 그리고 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다산1동·다산2동·별내동의 7개 동을 관할
- '22년 1월 기준으로 남양주시 전체 인구는 73만 4,013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수원, 고양, 용인 등에 이어 7위 수준임
- 남양주시의 면적은 총 458.1km²로 경기도 내에서 11위 수준이며, 서울시 면적이 605.2km²임을 감안하면 면적이 상당히 넓은 수준임
 - 그러나 전체 면적의 39.5%가 개발제한구역, 42.3%가 상수원특별대책지역, 9.2%가 상수원보호구역, 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도 별내, 다산, 진접 등과 함께 제3기 신도시로 왕숙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신도시를 통한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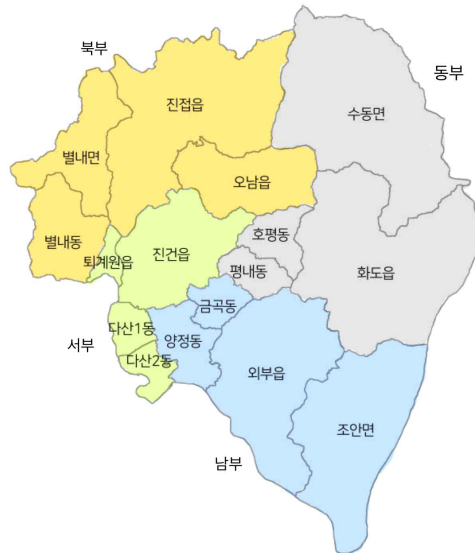
〈그림 II-1〉 남양주시 위치 및 주변지역



□ (복지)권역

-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남양주는 동부·북부·남부 등 3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복지영역에서는 희망케어센터를 중심으로 동부·서부·남부·북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동부생활권(화도, 수동, 조안), 북부생활권(진건, 진접·오남, 별내_동·면·퇴계원), 남부생활권(도통·지금·양정, 금곡, 와부, 호평·평내)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남양주시의 대표적 복지브랜드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는 남양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운영
 - 동부권역: 수동면, 화도읍, 호평동, 평내동
 - 서부권역: 퇴계원읍, 진건읍, 다산1동, 다산2동
 - 남부권역: 조안면, 와부읍, 금곡동, 양정동
 - 북부권역: 별내면,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 본 연구에서는 희망케어센터의 권역을 분석단위로 하여 남양주시의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자 함
 - 복지기준선의 지역단위는 기초정부(남양주), 읍면동(17개 + 1출장소)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 복지기준선 등 광역단위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남양주 지역 내 복지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 제약(실태조사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음
 - 따라서 현재 남양주시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본 권역(4개)를 중심으로 읍면동을 통합하여 지역분석단위로 설정

〈그림 II-2〉 남양주시 4권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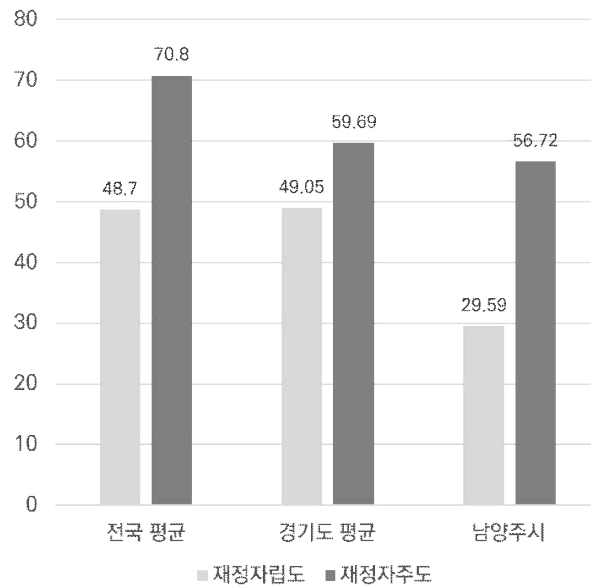


□ 남양주시 재정상황

- 남양주시의 재정은 19,008억원('21년 본예산 기준)이며, 도내 9위 수준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수준이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남양주시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50.19%로 나타나고 있어, 유사단체 평균인 41.85%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지방재정 통합공시에서는 유사 자치단체 : 특별/광역시(1), 도(1), 시(4), 군(4), 자치구(4)의 14개 유형으로 구분
 - 유형화 기준: 인구규모(30%), 최근 5년 인구증감률(10%),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30%), 일반회계예산규모(30%)
 - '21년 당초예산 기준 남양주시 재정자립도³⁾는 29.6%, 재정자주도는 56.7%로 전국 평균(48.7%, 70.8%)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 평균(49.1%, 60.0%)에 비해 낮은 수준임

3) 지방재정365. 지방재정 통합공시 재정자립도(당초) 개편 전 기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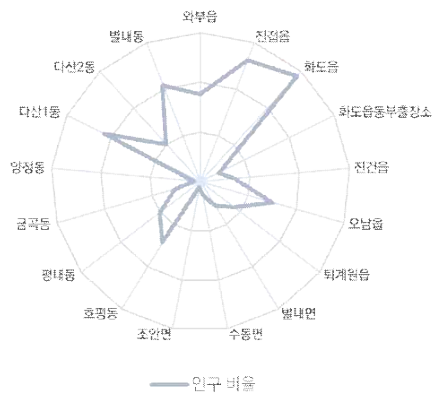
〈그림 Ⅱ-3〉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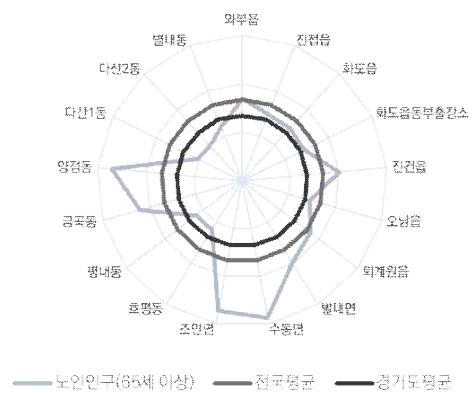
2) 읍면동별 인구 및 복지대상자

- 남양주시의 읍면동별 인구(전체,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등)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양주 내에서 인구 및 세대수는 화도읍이 가장 많으며, 조안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수동면, 조안면, 양정동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동별 격차는 매우 큼
 - 반면 아동인구의 경우에는 신도시인 다산1,2동과 함께 평내동, 호평동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4〉 읍면동별 인구 비율



〈그림 II-5〉 읍면동별 노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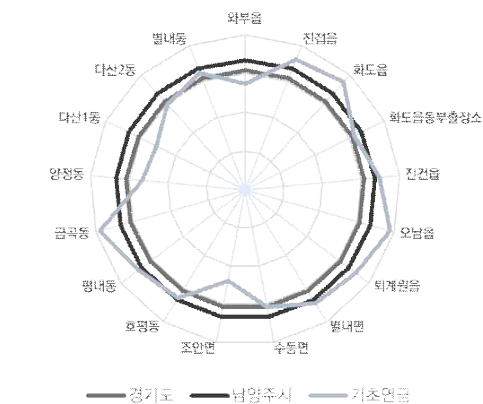


〈그림 II-6〉 읍면동별 아동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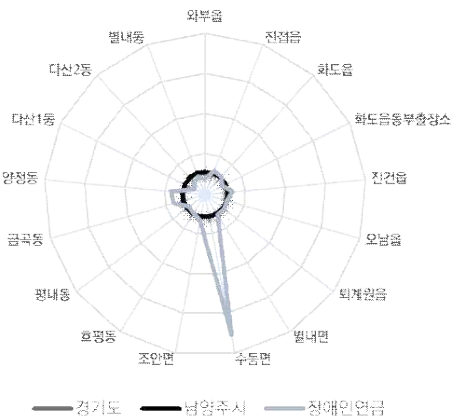


- 기본적인 인구와 함께 복지대상자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경우 금곡동, 오남읍 등에서는 경기 및 남양주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인구 비율은 수동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인구 비율은 남양주 평균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금곡동, 오남읍, 진접읍, 화도읍 등 구도심 및 읍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조안면, 와부읍, 양정동, 다산 1동 등은 경기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연금의 경우 남양주 및 경기도 평균수준은 비슷하나, 수동면에서도 수급률이 높은 것이 특징임

〈그림 II-7〉 읍면동별 기초연금 수급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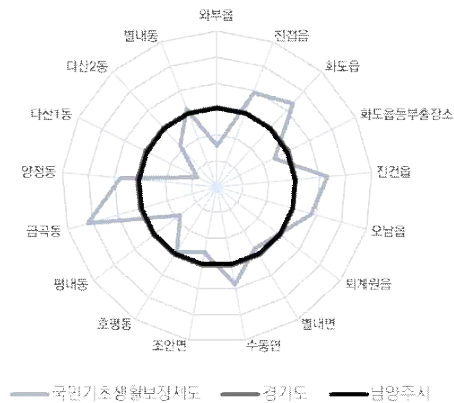
〈그림 II-8〉 장애인연금 수급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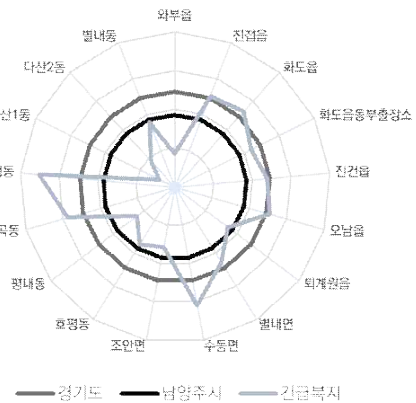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인구비율은 경기도 및 남양주 평균이 유사한 수준이나 읍면동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긴급복지의 경우 읍면동별 격차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 수급률이 낮게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률은 금곡동, 진접읍,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산 1,2동, 와부읍, 평내동 등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초수급자 수급률에서 다산 1동의 경우 수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곡동과의 격차가 3배에 이르고 있음
 - 긴급복지 수급률은 남양주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초수급률과 유사한 형태로 읍면동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반면 노인·장애인·아동 저소득(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를 제외하고, 취약계층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인구 비율은 앞선 데이터와는 상이하게 화도읍, 오남읍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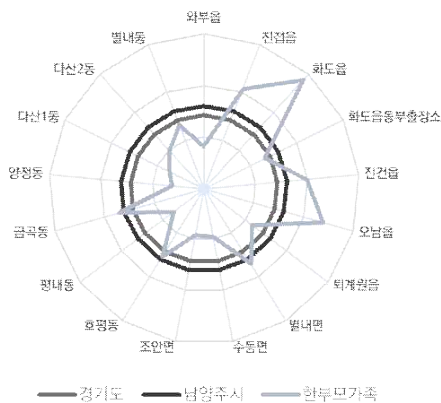
〈그림 II-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인구 비율



〈그림 II-10〉 긴급복지 수급인구 비율



〈그림 II-11〉 읍면동별 한부모가족 인구 비율



- 종합하면, 남양주시 읍면동별로 생애주기별 인구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별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읍면동별 또는 권역별 맞춤형 전략(복지기준선 및 전략과제)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영역별 사회보장 욕구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 지역주민욕구조사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보장 실태와 주민의 복지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7항(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연계
 -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진단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보장 관련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및 개입 필요 대상의 설정과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정책 기획의 근거로 활용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4기 조사에 이어 광역 차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통합적 조사 실시
 - 지난 4기에 이어 이번 5기에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지역 간 비교 가능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조사표를 구성하고,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추가 문항 필요
 - 사회보장 영역별 정책개입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확인 필요
 - 정책 설계의 다양화를 위한 조사표 내 사회보장영역의 확장 및 재편 필요
 -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필요

□ 지역주민욕구조사 조사설계

- (표본 규모) 본 조사의 표본크기는 작성되는 통계의 목표 오차, 가용 예산과 조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총 표본가구를 50,000가구로 결정

- 각 시군의 표본크기를 시군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는 방안으로 적용하였으며, 각 시군의 가구 및 인구 규모에 따라 5개의 그룹(권역)으로 구분 실시
 - 사회보장급여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경우, 각 시군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였으며,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구의 경우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일반 가구 대상 조사에서도 확률적으로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크기 결정
 -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4.0%p이며 시군별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3,800가구에서 최소 600가구를 조사
- (설문 문항) 가구 일반현황, 13개 사회보장 영역 관련 욕구 및 정책시급성·노력 체감도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통문항과 수원시 개별 문항으로 구성
-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 관계, 보호·안전, 교육, 고용, 주거, 법률 및 권익보장, 문화·여가 등 13개 영역
 - 정책연계 및 최근 사회복지 이슈 관련 문항 신설(정책 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

□ 지역주민욕구조사 응답결과(총괄)

- 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 응답자는 총 50,610가구이며, 남양주시 응답자는 2,500가구로 전체 응답자 중 4.94%를 차지
- 시군별 인구 및 가구 수에 따라 수원시가 3,822가구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남양주시의 경우 인구비례할당방식에 따라 2,500가구를 배정
 -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읍면동별로는 화도읍이 가장 많으며, 조안면이 가장 적으로 것으로 나타남
 - 조사된 2,500가구에 가중치를 적용한 289,925가구를 최종 분석에 사용

〈표 II- 1〉 남양주시 읍면동별 응답가구 현황

구분		조사가가구수	가중치가가구수	%
		(2,500)	(289,925)	100.0
읍면동	외부읍	(235)	(23,216)	8.0
	진접읍	(297)	(37,043)	12.8
	화도읍	(315)	(42,668)	14.7
	동부출장소	(35)	(6,090)	2.1
	진건읍	(103)	(10,829)	3.7
	오남읍	(200)	(21,644)	7.5
	퇴계원읍	(117)	(11,973)	4.1
	별내면	(91)	(8,382)	2.9
	수동면	(41)	(4,803)	1.7
	조안면	(9)	(2,015)	0.7
	호평동	(154)	(21,657)	7.5
	평내동	(153)	(13,540)	4.7
	금곡동	(72)	(8,841)	3.0
	양정동	(34)	(2,532)	0.9
	다산1동	(266)	(30,126)	10.4
	다산2동	(125)	(13,384)	4.6
	별내동	(253)	(31,182)	10.8

- 조사 참여가구 중 아동가구는 17.5%, 노인가구는 14.4%, 장애가구는 4.5%,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5.4%, 다문화가구는 0.3%, 맞벌이부부가구는 40.8%로 나타남⁴⁾
-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8.6%, 2인 가구는 41.0%, 3인 가구는 23.7%, 4인 가구는 14.9%, 5인 이상 가구는 1.8%로 나타남

4) - 아동 : 만 17세 이하

- 노인 : 만 65세 이상
- 아동가구 : 아동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 노인가구 : 노인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 등록장애인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받는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 다문화가구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주 기준 부부가 경제활동(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을 하고 있는 가구

〈표 II-2〉 남양주시 응답자 가구특성별 현황

구분		사례수(가구)	계
전 체		(289,925)	100.0
아동가구	아동가구	(50,834)	17.5
	비아동가구	(239,091)	82.5
노인가구	노인가구	(41,868)	14.4
	비노인가구	(248,057)	85.6
장애가구	장애가구	(13,070)	4.5
	비장애가구	(276,855)	95.5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5,625)	5.4
	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274,300)	94.6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	(896)	0.3
	비다문화가구	(289,029)	99.7
맞벌이부부가구	맞벌이부부가구	(118,345)	40.8
	비맞벌이부부가구	(171,580)	59.2
가구원 수	1인 가구	(53,850)	18.6
	2인 가구	(118,992)	41.0
	3인 가구	(68,729)	23.7
	4인 가구	(43,093)	14.9
	5인 이상 가구	(5,261)	1.8

- 가구 유형에 청년 가구 및 중장년 가구를 추가하였으며, 가구주 유형을 청년, 중장년, 노인 가구주로 세분화함⁵⁾

5) - 청년 : 만 19세~34세 가구원

- 중장년 : 만 50~64세 이하 가구원

- 청년가구 : 청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비청년가구 : 청년 가구원이 없는 가구

- 중장년가구 : 중장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중장년가구 : 중장년 가구원이 없는 가구

- 청년가구주가구 :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 청년_단독 : 청년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표 Ⅱ-3〉 남양주시 응답가구 유형(세분화)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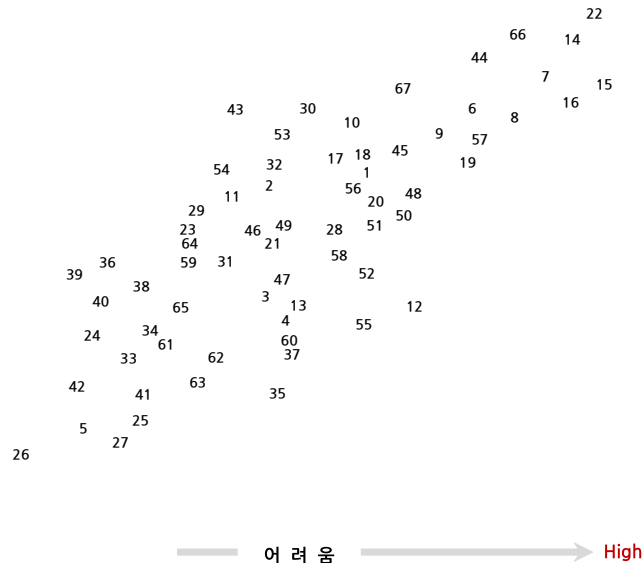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가구)	%
전 체			(289,925)	100.0
가구 유형	청년가구	청년가구	(93,955)	32.4
		비청년가구	(195,970)	67.6
	중장년가구	중장년가구	(245,247)	84.6
		비중장년가구	(44,678)	15.4
가구주 유형	청년가구주가구	청년_단독	(6,324)	2.2
		청년_비단독	(3,002)	1.0
		청년_청년만 거주	(6,078)	2.1
	중장년가구주가구	중장년_단독	(34,499)	11.9
		중장년_비단독	(125,506)	43.3
		중장년_중장년만 거주	(75,368)	26.0
	노인가구주가구	노인_단독	(13,027)	4.5
		노인_비단독	(9,515)	3.3
		노인_노인만 거주	(16,606)	5.7

- 청년_비단독 : 청년이 가구주이면서 청년 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청년_청년만 거주 : 청년이 가구주이면서 청년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중장년가구주가구 : 중장년이 가구주인 가구
- 중장년_단독 : 중장년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중장년_비단독 : 중장년이 가구주이면서 중장년 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중장년_중장년만 거주 : 중장년이 가구주이면서 중장년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
- 노인가구주가구 :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
- 노인_단독 : 노인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노인_비단독 : 노인이 가구주이면서 노인 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노인_노인만 거주 : 노인이 가구주이면서 노인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

2) 지역주민욕구조사 총괄분석

-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남양주시민의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과 필요성은 우상향의 경향성을 보이며, 일부 영역에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한 시점
- 아래 그림 중에서 1사분면에 위치한 영역들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사회보장영역임
- 사회보장영역(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민들은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비례하는(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12〉 남양주시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 및 필요성



- 아래 표는 사회보장영역 및 세부영역별로 경기도와 GAP을 분석한 것이며, 마이너스는 남양주가 좋은 상황을 의미하며, 플러스 값이 높은 것은 경기도에 비해 많이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인 돌봄 영역, 정신건강, 평생교육, 주거, 문화·여가 등의 영역에서 남양주 시민들의 어려움과 외부지원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아동과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은 남양주시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후술한 다른 사회보장지표와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
- 이는 남양주시민이 느끼는 어려움과 지원필요성이 수치화되는 물리적 지표와는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

〈표 II-4〉 남양주시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 및 필요성 정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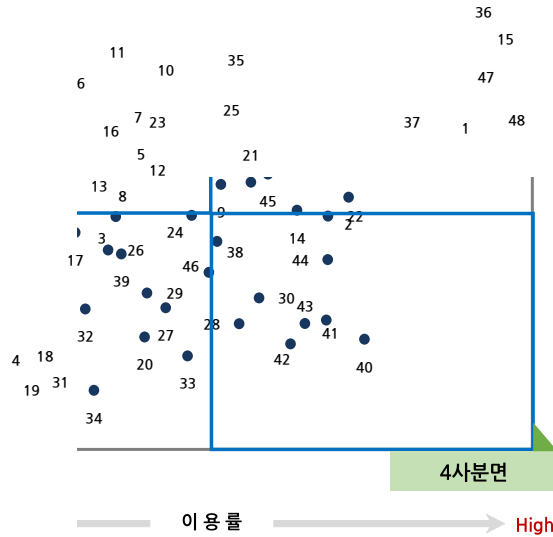
사회보장 영역		어려움을 겪는 수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아동 돌봄	1.양육비 부담	34.9	28.7	-6.3	45.1	36.6	-8.5
	2.양육지원시설 및 서비스 부족	33.7	25.0	-8.7	44.7	34.1	-10.6
	3.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34.6	25.1	-9.5	43.2	31.4	-11.9
	4.양육관련 정보와 양육기술 부족	32.7	23.0	-9.7	41.3	30.2	-11.1
	5.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22.1	16.5	-5.6	29.7	21.2	-8.5
노인 돌봄	6.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29.5	36.0	6.5	37.8	40.3	2.6
	7.가사활동의 어려움	30.5	37.9	7.4	39.0	43.0	4.0
	8.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29.9	36.0	6.1	38.0	40.2	2.2
	9.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29.4	33.7	4.2	37.0	38.2	1.2
	10.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24.7	29.7	5.0	38.0	39.3	1.4
	11.신체적·정신적 부담	23.2	24.5	1.4	34.9	35.1	0.2
	12.돌봄비용 부담	25.0	26.7	1.7	32.7	31.6	-1.1
	13.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27.0	26.4	-0.6	32.4	30.3	-2.1
장애인 돌봄	14.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38.7	41.2	2.5	46.1	45.7	-0.5
	15.가사활동의 어려움	39.2	41.3	2.1	46.8	45.6	-1.2
	16.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39.7	38.5	-1.2	47.2	41.0	-6.2
	17.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34.9	28.1	-6.8	43.8	38.2	-5.6
	18.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36.8	29.1	-7.6	45.1	38.3	-6.7
	19.신체적·정신적 부담	38.7	33.6	-5.0	45.0	37.6	-7.5
	20.돌봄비용 부담	33.3	30.2	-3.1	41.7	35.5	-6.2
	21.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32.6	26.5	-6.1	40.7	32.6	-8.1
	22.장애아동 돌봄 부담	54.9	52.6	-2.3	69.3	63.8	-5.5
	23.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	23.4	24.8	1.5	30.3	30.4	0.1
정신 건강	24.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14.7	17.4	2.8	23.1	23.4	0.4
	25.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13.5	16.7	3.1	20.9	21.5	0.6
	26.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11.9	14.1	2.2	19.1	18.9	-0.2
	27.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14.5	16.9	2.4	21.3	20.8	-0.5

사회보장 영역		어려움을 겪는 수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신체 건강	28.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25.8	26.4	0.7	33.5	33.8	0.3
	29.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25.8	24.5	-1.3	33.7	31.4	-2.3
기초 생활 유지	30.생계비 부족	27.2	28.1	0.9	35.2	34.1	-1.0
	31.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23.2	24.2	1.0	32.3	31.0	-1.2
	32.의료비 부족	24.9	26.0	1.1	34.5	34.6	0.0
	33.교육비 부족	19.5	19.1	-0.4	27.1	24.7	-2.4
	34.냉난방비 부족	20.6	20.5	-0.2	28.4	26.7	-1.7
	35.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2.6	21.9	-0.7	29.1	27.2	-1.9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6.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23.0	23.6	0.6	29.3	29.4	0.1
	37.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24.2	23.1	-1.0	30.8	28.2	-2.6
보호· 안전	38.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21.6	22.9	1.3	28.3	29.0	0.7
	39.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23.2	22.3	-0.9	30.7	29.5	-1.3
교육	40.기초학습능력의 부족	23.9	17.4	-6.5	31.8	23.7	-8.0
	41.학업유지의 어려움	25.1	17.9	-7.2	33.3	22.7	-10.6
	42.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23.9	16.8	-7.1	31.6	22.3	-9.3
	43.평생교육의 어려움	25.7	27.0	1.3	33.5	34.4	0.9
고용	44.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35.1	35.5	0.4	45.2	42.9	-2.2
	45.취업·창업 정보 부족	30.1	30.6	0.4	40.3	37.9	-2.4
	46.(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26.2	25.6	-0.5	35.8	32.5	-3.3
	47.창업자금 부족	24.8	25.5	0.7	33.8	31.7	-2.0
	48.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30.2	30.1	-0.1	38.8	36.0	-2.8
	49.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24.7	26.7	2.0	32.6	32.5	-0.1
	50.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26.1	27.9	1.8	33.7	33.9	0.2
	51.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26.3	27.6	1.4	34.0	33.9	-0.1
	52.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25.9	26.5	0.7	33.7	32.6	-1.1

사회보장 영역		어려움을 겪는 수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주거	53.화장실 열악	25.7	27.7	2.0	33.5	33.9	0.5
	54.주방시설 열악	24.2	26.7	2.5	32.5	33.1	0.6
	55.위생 상태 열악	24.3	26.2	1.8	32.1	31.9	-0.2
	56.도배·장판 열악	26.9	30.0	3.1	34.6	35.6	1.0
	57.충간방음 열악	33.6	34.3	0.7	40.4	38.6	-1.8
	58.냉·난방 열악	23.9	27.9	4.0	30.8	32.2	1.4
	59.전기·가스시설 열악	21.3	23.9	2.6	28.2	29.3	1.1
	60.상하수도 열악	21.2	23.4	2.2	28.0	28.7	0.7
	61.지붕노후(누수 등)	20.5	21.3	0.8	27.1	25.8	-1.3
	62.벽·담 등 노후	21.2	21.3	0.0	27.7	25.7	-1.9
	63.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21.7	21.8	0.0	27.9	25.3	-2.6
법률 및 권익 보장	64.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23.2	24.5	1.3	31.9	30.4	-1.5
	65.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22.7	22.6	-0.1	31.4	27.6	-3.8
문화 · 여가	66.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32.9	36.9	4.1	42.1	43.9	1.8
	67.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31.2	33.0	1.7	41.4	41.8	0.4

- 남양주시민의 지역사회보장 지원·서비스 이용률 및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어려움과 외부지원의 필요성과는 달리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임
- 앞선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 필요성은 우상향의 경향성(어려움이 높으면, 필요성도 높음)을 보이고 있으나, 이용률과 향후 이용의향은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아래 그림에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한 이용률과 이용의향이 반대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2사분면의 경우 현재 이용률은 낮으나 향후 이용의향이 높다면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 4사분면과 같이 이용률은 높으나, 향후 이용의향이 낮은 영역은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나, 이용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

〈그림 II-13〉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이용률 및 향후 이용 의향



- 아래 표는 사회보장영역 및 세부영역별로 경기도와 GAP을 분석한 것이며, 이용률과 향후 이용의향의 부호가 반대인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
 -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평생교육, 문화여가 등에서 세부영역들은 현재 이용률은 낮으나, 향후 이용의향이 높기 때문에 이용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기초생활유지, 사회적관계증진, 고용 등에서 세부영역들은 현재 이용률은 높으나, 향후 이용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만족도 제고를 통한 이용의향 확대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표 II-5〉 남양주시 사회보장영역별 지원·서비스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

사회보장 영역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아동 돌봄	1.양육비 지원	44.3	29.9	-14.4	58.6	47.0	-11.7
	2.양육지원 시설·서비스	39.8	22.3	-17.5	54.3	33.7	-20.6
	3.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14.7	7.2	-7.4	44.5	31.0	-13.5
	4.아동의 발달 문제 지원 서비스	7.4	0.8	-6.7	25.3	15.1	-10.2

사회보장 영역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노인 돌봄	5.개인위생 관리 지원 서비스	11.1	7.4	-3.8	37.9	39.7	1.9
	6.가사 지원 서비스	11.6	5.0	-6.6	50.8	53.3	2.5
	7.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10.9	8.2	-2.7	47.5	41.7	-5.8
	8.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12.3	7.7	-4.6	51.9	37.6	-14.3
	9.돌봄 비용 지원 서비스	13.7	14.1	0.3	44.4	35.5	-8.9
장애인 돌봄	10.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23.3	10.5	-12.8	45.1	55.1	9.9
	11.가사지원 서비스	23.8	7.4	-16.5	56.7	57.5	0.8
	12.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29.7	9.9	-19.8	56.8	41.1	-15.6
	13.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24.0	6.2	-17.9	58.0	39.0	-19.1
	14.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29.0	19.0	-10.0	50.2	31.9	-18.3
	15.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17.7	55.2	37.5	17.2	55.2	38.0
정신 건강	16.정신건강증진 서비스	9.5	6.9	-2.6	40.6	46.5	6.0
	17.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5.2	4.6	-0.6	23.6	28.8	5.2
	18.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3.6	2.7	-0.9	16.6	15.6	-1.0
	19.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2.5	1.8	-0.7	12.9	10.9	-2.0
	20.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9.5	9.1	-0.4	15.5	14.4	-1.1
신체 건강	21.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20.3	16.0	-4.3	37.1	35.8	-1.4
	22.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20.0	21.0	1.0	37.1	31.1	-6.1
기초 생활 유지	23.생계비 지원	10.1	11.3	1.3	38.9	42.1	3.2
	24.주거비 지원(주택구입비 제외)	10.3	12.2	1.8	35.5	31.2	-4.3
	25.의료비 지원	13.6	14.6	1.0	50.6	48.1	-2.6
	26.교육비 지원	14.7	6.8	-8.0	29.4	26.4	-3.0
	27.냉난방비 지원	12.5	10.5	-2.0	25.9	18.4	-7.5
	28.가계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	13.5	15.2	1.8	21.6	16.2	-5.3

사회보장 영역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가족 및 사회적 관계	29.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14.6	9.3	-5.4	22.8	20.5	-2.3
	30.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13.9	16.5	2.6	25.4	19.8	-5.6
보호· 안전	31.가족 내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	5.2	3.7	-1.5	14.2	12.0	-2.2
	32.가족 외부의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	4.9	5.3	0.4	19.9	18.3	-1.6
교육	33.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14.1	11.9	-2.2	10.8	11.8	0.9
	34.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11.0	5.8	-5.2	9.9	7.1	-2.8
	35.평생교육 서비스	18.3	14.0	-4.4	40.3	51.1	10.8
고용	36.일자리 지원 서비스	26.6	31.0	4.4	59.1	62.9	3.8
	37.취업·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	21.2	26.4	5.2	47.2	47.9	0.7
	38.(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	11.0	13.8	2.8	32.7	27.6	-5.1
	39.창업자금 지원 서비스	8.1	7.6	-0.5	27.6	25.9	-1.8
	40.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14.2	23.3	9.2	17.7	14.1	-3.6
	41.근로조건·환경 개선 서비스	11.7	20.9	9.2	18.7	16.7	-1.9
	42.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	13.2	18.6	5.4	21.0	13.5	-7.6
	43.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	15.2	19.5	4.3	19.9	16.3	-3.6
주거	44.주택개조서비스	12.8	21.0	8.1	28.7	25.1	-3.6
법률 및 권익 보장	45.법률 지원 서비스	14.8	17.1	2.3	33.8	36.9	3.0
	46.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12.1	13.3	1.1	28.6	23.3	-5.3
문화· 여가	47.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41.1	31.2	-9.9	50.1	54.0	3.9
	48.체육 활동 지원 서비스	43.0	33.2	-9.8	48.2	48.1	-0.1

3) 영역별 주요 응답결과

(1) 소득영역

- 소득영역에서는 가구당 경상소득, 총소비를 살펴보고, 가구당 최소한 필요한 생활비수준, 적정하다고 생각한 생활비수준을 살펴봄
- 남양주시 연평균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4,668만원이며 중앙값은 4,800만원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부부가구의 경상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상소득은 세금납부,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하지 않은 시장소득임
 - 남양주시 전체 평균소득은 4,668만원이며, 아동가구는 5,280만원, 맞벌이 가구 5,832만원으로 나타남
 - 중위값을 살펴보면, 전체 4,80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가 가장 높은 6,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장 경상소득이 낮은 가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로 나타났고, 장애가구, 노인가구 역시 경상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이 있거나 청년이 있는 가구, 중장년가구의 경우에는 연평균 4,668만원보다 경상소득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의 경우 연평균 경상소득이 1,908만원으로 나타났고, 장애가구는 2,508만원, 노인가구는 2,712만원으로 나타남
 - 가구주 중심으로 살펴보다라도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이 2,61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6〉 남양주시 가구유형별 경상소득

구분	경상소득 연평균 (만 원)	경상소득 중앙값 (만 원)
전체	4,668	4,800
아동가구	5,280	4,800
청년가구	5,616	5,400
중장년가구	4,980	4,800
노인가구	2,712	2,400
장애가구	2,508	2,160

사회보장가구		1,908	1,200
다문화가구		3,708	4,200
맞벌이부부가구		5,832	6,000
가구주	청년가구주가구	4,584	4,560
	중장년가구주가구	5,004	4,800
	노인가구주가구	2,616	2,160

- 월 경상소득을 경기도, 남양주,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부권역의 월 경상소득이 가장 높은 437.6만원으로 나타났고, 동부권역이 가장 낮은 361.8만원임
- 월 100만원 미만 가구는 경기도가 전체 가구의 3.8%, 남양주는 4.5%로 경기도보다 100만원 이하 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동부권역의 경우 100만원 이하 가구 비율이 7.3%로 나타나고 있음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구간은 300만원~500만원인데, 경기도는 35.5%가 해당 구간에 포함되고 남양주는 41.0%가 해당 구간에 포함됨. 그러나 서부권역의 경우 500만원 이상 가구비율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 월 경상소득을 살펴본 결과 남양주는 경기도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권역별로 보더라도 서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역이 경기도 보다 평균소득이 낮은 상황임

〈표 II-7〉 가구 총 소득(월평균)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3.8	8.2	12.9	35.5	38.3	1.2	430.8
남양주 평균		4.5	10.1	14.6	41.0	29.4	0.4	388.7
	북부	3.1	10.0	12.2	49.7	24.8	0.2	384.5
	서부	3.5	8.0	14.9	29.5	42.6	1.4	437.6
	남부	3.0	12.9	13.9	41.7	28.5	0.0	376.7
	동부	7.3	10.5	17.4	39.7	25.1	0.0	361.8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월 생활비를 경기도, 남양주,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부권역의 월 소비가 가장 많은 348.6만원으로 나타났고, 동부권역이 가장 낮은 241.5만원으로 나타남
 - 생활비는 경상소득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월 100만원으로 소비하는 가구가 경기도 5.2%, 남양주 5.5%로 나타났고, 동부권역이 9.1%로 높게 나타남
 - 월 생활비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91.2만원인 반면, 남양주는 273.2만원으로 낮게 나타났고, 동부권역이 가장 낮은 239.7만원으로 나타남
 - 권역별 월 생활비를 살펴본 결과 남양주는 경기도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생활비도 낮은 상황임.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권역의 생활비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표 II-8〉 가구 총 생활비(월평균)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5.2	17.9	26.3	40.0	10.5	0.1	291.2
남양주 평균	5.5	21.4	31.3	34.8	6.8	0.3	273.2
북부	3.6	24.7	30.4	37.1	4.2	0.0	264.3
서부	3.9	13.7	22.5	39.9	19.1	0.8	348.6
남부	4.7	26.0	32.6	33.7	3.0	0.0	241.5
동부	9.1	21.6	38.2	28.8	2.1	0.2	239.7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를 살펴보면, 이 역시 서부권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272.0만원으로 실제 생활비는 291.2만원보다 20만원 적은 수준임. 남양주의 경우에는 실제 생활비도 23만원 적은 247.1만원이 최소생활비라고 응답하였음
 - 최소생활비와 관련해 다른 조사와 다른 점은 동부권역 주민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223만원인 반면, 남부권역 주민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211.4만원으로 나타남

〈표 II-9〉 최소 생활비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4.3	21.6	30.7	34.5	8.9	0.0	272.0
남양주 평균	3.8	28.7	33.0	31.5	3.0	-	247.1
북부	2.2	37.1	24.8	33.1	2.8	-	241.6
서부	2.1	17.6	26.1	46.5	7.7	-	307.0
남부	5.5	30.1	46.4	17.2	0.8	-	211.4
동부	6.1	27.1	41.7	24.5	0.5	-	223.0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정생활비는 경기도의 경우 340만원, 남양주 주민들은 299.1만원으로 나타나 경기도보다 4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남부권역은 적정수준 생활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생활을 유지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실제 생활비 291.2만원보다 적정생활비가 340만원으로 나타나 적정생활비가 실제 생활비보다 48.8만원 많은 상황임. 반면, 남양주의 경우 실제 생활비 273.2만원, 적정생활비 299.1만원으로 그 차이가 26만원으로 적음
 - 권역별로 보면, 남부권역의 경우 실제 생활비 241.5만원, 적정생활비 247.8만원으로 그 차이가 6.2만원에 그치고 있음
 - 남부권역과 같이 실제 생활비와 적정생활비의 차이가 작고, 적정생활비가 낮은 것은 만족할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거나 추후 발생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임

〈표 II-10〉 적정 생활비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1.3	13.1	24.8	41.7	19.0	0.1	340.0
남양주 평균		1.4	17.2	35.9	35.7	9.7	0.1	299.1
	북부	0.5	21.2	33.8	36.0	8.5	0.0	291.9
	서부	0.9	8.6	23.3	39.3	27.6	0.4	384.1
	남부	1.3	22.1	43.9	31.4	1.3	0.0	247.8
	동부	2.8	17.2	44.3	34.5	1.2	0.0	265.0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부권역 주민들이 월세연체, 공과금체납, 교육비체납, 문화여가에서의 소외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표는 각 항목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임. 월세를 연체한 경험은 경기도 전체가 8.7%, 남양주 평균 5.9%로 나타나고 있음. 남부권역이 가장 높은 10.9%로 나타남
 - 문화여가를 즐기지 못한 경험은 경기도 평균이 12.3%로 나타났고, 남양주는 14.1%로 나타남. 남부권역 주민 중 문화여가를 즐기지 못한 비율이 20.3%로 나타남

〈표 II-11〉 경제적 이유로 경험한 부정적 경험

(단위: %)

구분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	공과금 (전기/수도/가스비) 또는 관리비를 못낸 적이 있다	자녀의 공교육비 (대학생 포함)를 못낸 적이 있다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를 미납한 적이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문화여가를 즐기지 못한 적이 있다	통신비를 연체한 적이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대출금 및 카드값을 상환하지 못한 적이 있다	주거환경 개선 (누수 등)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경기도 평균	8.7	2.6	3.4	2.3	2.6	3.9	12.3	3.3	1.5	6.5	3.2
남양주 평균	5.9	2.9	3.9	3.0	3.2	5.5	14.1	4.4	2.4	5.2	2.2
	북부	8.0	2.1	2.5	1.6	2.2	2.9	5.1	1.9	1.9	2.3
	서부	2.3	1.3	3.1	0.6	2.4	2.2	18.8	4.9	1.4	1.4
	남부	10.9	6.8	12.8	7.1	3.1	7.7	20.3	2.3	4.0	2.1
	동부	6.5	3.3	3.0	4.7	4.8	9.9	17.9	7.9	3.1	2.7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2) 돌봄_아동

- 아동돌봄과 관련하여, 세부영역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권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남부와 동부지역이 경기도 및 남양주 평균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는 아동돌봄에서 남양주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영역별로는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 필요성 모두 양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동발달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낮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부권역의 상황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부, 동부, 남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부권역과 동부권역은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 필요성이 남양주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표 II-12〉 아동돌봄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아동 양육 부담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아동 양육 부담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양육비 부담	양육지 원 시설· 서비스 부족	경제활 동으로 인한 양육 시간 부족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		양육비 부담	양육지 원 시설· 서비스 부족	경제활 동으로 인한 양육 시간 부족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	
경기도 평균		34.9	33.7	34.6	32.7	22.1	45.1	44.7	43.2	41.3	29.7
남양주 평균		28.7	25.0	25.1	23.0	16.5	36.6	34.1	31.4	30.2	21.2
	북부	27.8	24.6	24.8	23.1	15.8	34.5	33.9	30.1	29.3	19.3
	서부	17.1	13.5	14.1	13.3	9.1	21.6	19.5	15.6	14.7	10.8
	남부	39.3	37.6	36.7	31.7	28.1	53.1	50.2	51.8	47.2	39.3
	동부	41.3	34.7	34.1	31.1	21.4	54.2	45.2	44.1	44.5	29.7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3) 돌봄_노인

-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세부영역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시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의 어려움 영역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남양주시 노인들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 6~7점 정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도 약 4~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 사회보장지표(물리적 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임
 -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상대적으로는 남양주시 내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경기도 평균 이하), 동부권역의 노인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세부영역에서 40점 이상의 어려움을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3〉 돌봄 노인 관련 어려움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경기도 평균	29.5	30.5	29.9	29.4	24.7	23.2	25.0	27.0
남양주 평균	36.0	37.9	36.0	33.7	29.7	24.5	26.7	26.4
읍면동	북부	21.6	22.4	21.3	22.3	19.0	16.5	17.4
	서부	35.5	34.5	30.3	24.4	20.2	16.8	19.0
	남부	36.5	40.7	41.1	36.9	24.8	20.0	25.6
	동부	45.4	48.0	45.0	43.2	44.0	40.9	42.1

주: 읍면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외부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의 정도와 유사하게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시 노인들의 응답결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어려움의 정도와 달리 돌봄비용부담은 외부지원 필요성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 사회보장지표(물리적 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임
-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상대적으로는 남양주시 내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경기도 평균 이하), 동부권역의 노인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사활동, 재난관련 대처, 건강관련 응급상황 등에서는 50점 이상으로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세부영역 또한 40점대 후반으로 높은 수준임

〈표 II-14〉 돌봄 노인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점)

구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 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경기도 평균	37.8	39.0	38.0	37.0	38.0	34.9	32.7	32.4
남양주 평균	40.3	43.0	40.2	38.2	39.3	35.1	31.6	30.3
	북부	24.8	26.1	24.0	23.3	25.3	24.7	22.3
	서부	38.2	37.9	31.1	23.3	22.3	23.4	20.9
	남부	45.1	53.2	49.6	43.5	45.4	38.6	31.5
	동부	48.6	50.1	49.0	51.2	52.2	49.1	47.2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4) 돌봄_장애인

- 장애인돌봄과 관련하여, 세부영역 기준으로 일상생활영역에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시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긴급상황 대처 및 돌봄 부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남양주시 장애인들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개인위생관리, 가사활동 등임
 -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타 사회보장지표(물리적 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임
 -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상대적으로는 남양주시 내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경기도 평균 이하), 동부권역의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세부영역에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움의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0점 상의 어려움을 응답하는 것도 개인위생관리, 가사활동, 이동 및 외출, 신체적·정신적 부담 등 많이 나타나고 있음

〈표 II-15〉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 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경기도 평균	38.7	39.2	39.7	34.9	36.8	38.7	33.3	32.6
남양주 평균	41.2	41.3	38.5	28.1	29.1	33.6	30.2	26.5
	북부	28.1	29.9	30.4	23.4	23.4	25.5	21.0
	서부	50.4	50.4	38.4	23.0	26.4	30.5	30.8
	남부	39.8	41.2	37.4	24.6	26.9	27.1	28.2
	동부	44.1	42.6	45.2	37.3	36.7	48.0	38.7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외부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의 정도와 유사하게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시 장애인들의 응답결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남양주시의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돌봄과 관련해서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권역별로는 동부권역의 장애인들이 외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세부영역에서 높게 응답하고 있음
- 단, 돌봄비용 및 돌봄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타 사회보장지표(물리적 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임
- 또한 서부권역의 장애인들은 개인위생관리,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의 외부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양주시 권역별 응답결과 중 최고 수준

〈표 II-16〉 장애인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점)

구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 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경기도 평균	46.1	46.8	47.2	43.8	45.1	45.0	41.7	40.7
남양주 평균	45.7	45.6	41.0	38.2	38.3	37.6	35.5	32.6
북부	34.2	37.2	36.7	34.0	36.0	31.1	33.4	33.7
서부	53.0	53.8	36.6	29.4	31.4	34.5	33.9	27.9
남부	43.7	45.5	39.5	36.3	35.3	33.7	34.9	30.1
동부	49.0	45.2	48.4	49.6	46.9	49.2	39.8	38.8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5) 건강

-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남양주시는 경기도 평균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어려움과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응답하고 있으나, 권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평균 및 남양주 전체는 어려움의 정도에 비해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부영역별로는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어려움과 지원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살관련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남양주시 권역별로는 동부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북부권역에 비해 2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동부권역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중증정신질환, 중독 등에 대한 외부지원 필요성은 40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북부와 서부권역이 남양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7〉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정신 건강 증진의 어려움	중증 정신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자살 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정신 건강 증진의 어려움	중증 정신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자살 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경기도 평균	23.4	14.7	13.5	11.9	14.5	30.3	23.1	20.9	19.1	21.3
남양주 평균	24.8	17.4	16.7	14.1	16.9	30.4	23.4	21.5	18.9	20.8
	북부	17.7	11.6	12.0	11.3	13.8	21.0	15.6	14.7	14.1
	서부	20.3	6.8	6.4	5.2	5.9	24.1	9.5	8.2	6.2
	남부	30.7	19.5	12.2	10.7	18.7	38.9	30.7	19.8	17.7
	동부	33.7	31.0	31.3	25.3	27.6	42.0	39.5	39.8	34.2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신체건강과 관련해서, 남양주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신체적 질환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일상적 신체 건강관리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북부와 서부권역은 남양주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신체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동부와 남부권역은 상대적으로 신체적 질환 및 일상적 신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외부지원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영역별로는 일상적 신체건강관리는 남부권역에서,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는 동부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두 권역의 차이는 크지 않음

〈표 II-18〉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경기도 평균		25.8	25.8	33.5	33.7
남양주 평균		26.4	24.5	33.8	31.4
	북부	19.0	14.4	21.9	19.3
	서부	22.5	20.4	27.0	24.8
	남부	33.7	34.5	44.3	45.2
	동부	34.5	34.4	47.7	44.1

주: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6) (평생)교육

-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남양주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평생교육은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교육영역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소관사항으로 집행부(복지영역)에서는 주로 평생교육을 다루고 있음
 - 그러나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행정부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육구조사에는 평생교육과 함께 일반적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음
 - 남양주시민들은 학업보다는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 필요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초학습능력, 학업유지, 학교생활 어려움 등의 세부영역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을 응답한 것과 차별성을 가짐\
 - 그러나 권역별로 응답결과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학업과 관련해서 동부와 남부권역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을 보이고 있음
 - 학업의 어려움은 남부권역에 비해 동부권역의 어려움 정도가 높은 수준이나, 외부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부지역이 모든 세부영역에서 4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19〉 교육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학업의 어려움			평생 교육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평생 교육의 어려움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	학업 유지의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	학업 유지의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경기도 평균	23.9	25.1	23.9	25.7	31.8	33.3	31.6	33.5
남양주 평균	17.4	17.9	16.8	27.0	23.7	22.7	22.3	34.4
	북부	13.7	14.9	13.0	20.3	18.7	18.2	26.6
	서부	8.0	8.3	13.1	23.6	8.1	9.7	28.8
	남부	27.7	28.5	26.1	34.2	47.8	45.5	46.9
	동부	35.1	34.0	27.1	33.9	44.9	39.0	41.9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7) 주거

- 주거와 관련해서, 남양주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응답하고 있으며, 권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주거내부환경과 관련하여 화장실, 도배·장판, 전기·가스 등 세부영역에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신도시가 많은 남양주의 특성상 구도심과 신시가지 사이의 권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구도심(평내, 호평, 금곡 등)이 속해있는 남부와 동부권역에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 지역또한 GTX 신노선 등으로 인해 개발호재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남양주시 전반적으로 주거 내부환경과 관련한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표 II-20〉 주거 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단위: %)

구분	주거 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화장실 열악	주방 시설 열악	위생 상태 열악	도배· 장판 열악	충간 방음 열악	냉·난 방 열악	전기· 가스 시설 열악	상하 수도 열악	지붕 노후 (누수 등)	벽·담 등 노후	주택 내 장애물 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경기도 평균	25.7	24.2	24.3	26.9	33.6	23.9	21.3	21.2	20.5	21.2	21.7
남양주 평균	27.7	26.7	26.2	30.0	34.3	27.9	23.9	23.4	21.3	21.3	21.8
북부	22.3	20.2	19.3	20.3	25.4	19.6	18.5	17.9	17.1	17.4	17.2
서부	20.0	19.6	19.5	20.9	27.3	17.9	14.1	13.3	13.1	11.7	12.1
남부	33.1	33.4	33.5	42.9	49.9	41.1	33.1	31.1	32.8	36.8	35.3
동부	37.3	36.4	35.8	42.2	43.0	39.2	33.3	33.8	27.2	26.3	28.5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주거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은 어려움의 정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권역별 격차는 높게 나타남
 - 주방시설, 도배·장판 전기·가스 시설 등 세부영역에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세부영역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외부지원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층간방음과 관련해서는 남부권역의 외부지원 필요성이 55.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는 서부권역의 외부지원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21〉 주거 내부환경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단위: %)

구분		주거 내부환경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화장 실 열악	주방 시설 열악	위생 상태 열악	도배· 장판 열악	층간 방음 열악	냉·난 방 열악	전기· 가스 시설 열악	상하 수도 열악	지붕 노후 (누수 등)	벽·담 등 노후	주택 내 장애 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경기도 평균		33.5	32.5	32.1	34.6	40.4	30.8	28.2	28.0	27.1	27.7	27.9
남양주 평균		33.9	33.1	31.9	35.6	38.6	32.2	29.3	28.7	25.8	25.7	25.3
	북부	26.5	26.3	23.8	24.4	29.0	22.7	23.3	22.7	21.8	21.4	21.1
	서부	24.8	24.1	24.2	24.3	29.2	19.1	16.7	16.5	15.4	15.5	14.6
	남부	44.4	45.2	44.9	50.7	55.4	49.2	42.7	41.5	41.5	43.5	39.6
	동부	44.6	42.3	41.3	50.1	49.4	45.4	39.9	39.3	31.6	30.9	32.0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주거내부환경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은 주거 여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단독 및 연립주택이 많은 동부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22〉 주거 여건

(단위: %, 만원)

구분	주거형태						점유형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택이외의거처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자가	전세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경기도 평균	9.6	11.2	11.3	67.2	0.3	0.4	60.8	27.0	10.8	0.5	0.7
남양주 평균	12.9	7.4	16.8	62.0	0.6	0.2	58.8	27.4	13.0	0.1	0.7
	북부	6.1	9.5	2.5	81.0	0.4	50.1	29.7	19.5	0.0	0.7
	서부	4.5	2.9	7.2	83.7	1.8	62.4	21.5	15.9	0.0	0.2
	남부	23.2	5.4	9.9	61.4	0.0	79.7	15.0	4.3	0.3	0.8
	동부	22.5	9.4	42.5	25.2	0.2	57.1	34.5	7.2	0.2	1.0

- 남양주시 주택가격 및 임차료는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권역별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남
 - 다산신도시 등 최근 개발된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나, 동부권역은 경기도 평균의 60% 수준임
 - 주택임차료에서 전세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 차이가 권역별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는 권역별로 차이가 없음

〈표 II-23〉 주거 여건(계속)

(단위: %, 만원)

구분		주택가격 (자가) 평균[만원]	주택임차료			
			전세- 전세보증금_ 평균[만원]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월세_ 평균[만원]
				보증금_평균 [만원]	월세_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49,555	27,544	4,165	29	34
남양주 평균		47,230	23,870	2,936	24	19
	북부	48,078	28,592	2,738	21	-
	서부	71,211	30,786	3,669	25	-
	남부	42,487	20,155	2,031	27	18
	동부	29,538	16,831	2,537	32	20

(8) 종합_지역만족도 및 불균형 인식

- 앞선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의 권역별 격차를 고려하면, 지역 사회 및 거주지역 만족도는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삶 및 지역사회, 거주지역 만족도는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문항과 달리 권역별 격차는 크지 않음
 - 예로 거주지역 만족도의 경우 남양주 평균(58.9점)과 최고 권역(60.4), 최저 권역(57.5점) 간 격차가 크지 않음
 - 특히 남부권역의 경우 거주지역 만족도는 남양주 내 4개 권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세부영역별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서부권역의 경우 삶의 질 만족도가 55.6점으로 남양주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표 II-24〉 삶 및 지역사회, 거주지역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현재의 삶의 질	거주지역 만족도
경기도 평균		63.5	63.8	59.8	61.5
남양주 평균		63.1	62.9	56.4	58.9
	북부	61.6	63.0	59.3	58.8
	서부	72.8	66.4	55.6	60.0
	남부	62.2	62.3	55.8	60.4
	동부	57.9	60.5	54.0	57.5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 및 외부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게 응답한 동부권역 주민들이 삶의 질 여건의 불균형 수준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II-25〉 지역간 불균형

(단위: 점)

구분		소득 및 자산 (거주 지역 주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등)	주거 (주택 및 주변 시설의 낙후 정도, 대중교통 편리성 등)	일자리 (일자리의 수, 일자리의 질, 임금 수준등)	교육 시설 및 서비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설학 원 등)	사회 복지 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제공 서비스)	의료시 설 및 서비스 (종합병원/ 의원등)	생활편 의시설 (마트, 식당, 사우나, 미용실 등)	문화·여 가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
경기도 평균		42.4	41.5	44.7	40.7	41.2	42.5	38.1	44.1	41.9
남양주 평균		44.0	44.6	49.1	46.2	44.9	46.7	43.0	45.1	43.4
	북부	41.9	39.6	45.1	44.6	44.7	44.7	42.0	44.9	43.0
	서부	48.4	48.9	52.2	44.6	41.9	41.2	40.3	43.6	45.3
	남부	44.8	53.2	55.9	48.3	51.2	54.1	44.1	43.5	44.2
	동부	42.7	43.4	48.3	48.2	44.9	50.1	45.8	47.2	42.0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3. 사회보장지표 현황 및 변화

□ 지표 생산시점 및 경기도와 격차(변화)

- 사회보장지표는 지역주민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통한 것과 물리적 상황에 대한 행정(공공)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음
 -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동되는 지역주민욕구조사 등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데이터는 생산주기가 4년이며, 지표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 등 생산주기가 다르게 나타남
- 남양주에서는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남양주시 사회보장지표 및 성과지표 연구」를 진행하여, 남양주의 사회보장영역별 지표수준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 협의체는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의 10대 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 전국·경기도·남양주시 사회보장지표를 검토
 - 세부 지표별 경기도 31개 시군 상위 1~3위 지표값과 도내 인구규모가 유사한 5개 시의 지표값을 비교
 - 또한 사회보장지표 간 갭(GAP)을 비교하여 남양주의 사회보장 수준을 진단
-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업범위(5대 분야 7개 영역)에 대해 사회보장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양주시 사회보장 수준을 재진단
 - 단순한 사회보장지표의 수준 및 gap과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추적·분석함으로써 격차가 벌어지거나 좁혀지는 부분도 파악
 - 지속적으로 격차가 유지 또는 확대되는 항목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고려하여 향후 7개 영역의 복지기준선 설정의 근거로 활용

□ 돌봄_아동영역

- 아동돌봄과 관련해서,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대부분의 항목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다소 높거나 유사하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낮은 항목의 경우에도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조사되었던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격차가 3점 정도였으나, 2021년 5기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서는 4.8점으로 격차가 확대

〈표 II-26〉 아동돌봄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명)	569.1	605.7	2019	584.4	616.1	2020	15.3	10.4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명)	512.6	515.3	2019	462.8	455.3	2020	-49.8	-60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명)	327.3	292	2019	311.5	278.3	2020	-15.8	-13.7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26/31	설치됨	2019	27/31	설치됨	2020	1	설치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 별어린이집 정원(명)	689.3	747.6	2019	713.1	765.7	2020	23.8	18.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11.82%	11.75%	2019	14.43%	15.30%	2020	2.61%	3.55%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총족률(%)	76.30%	84.00%	2019	79.10%	86.20%	2020	2.8%	2.2%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81.60%	81.50%	2019	81%	80%	2020	-0.006	-0.015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점)	7.2 (10점)	6.9 (10점)	2018	70.3 (100점)	65.6 (100점)	2021	-1.7 (100점)	-3.4 (100점)
'나홀로 아동' 비율(%)	-	10.61%	2018	-	-	미생산	-	-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점)	-	5.85	2018	-	-	미생산	-	-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명)	721.0	737.1	2019	691.0	691.2	2020	-30.0	-45.9

□ 돌봄_노인영역

- 노인돌봄과 관련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종사자 등 인프라적 측면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천명당 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도와 남양주 공통적 현상이나, 남양주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는 경기도 평균의 21%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의 수와 규모가 매우 적음을 의미

- 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균의 경우 종사자 수가 늘어남에 비해 남양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조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자료와 경기도 평균은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2021년 조사결과 경기도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27〉 노인돌봄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항목	사회보장지표						변화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노인인구 비율	11.87%	12.71%	2019	12.47%	13.25%	2020	0.60%	0.54%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2.96%	2.76%	2019	3.21%	2.98%	2020	0.25%	0.22%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6.34	6.11	2019	6.09	5.81	2020	-0.25	-0.3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12.73	3.81	2019	16.3	3.44	2020	3.57	-0.37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4	6.81	2019	4.01	6.45	2020	0.01	-0.36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9.03%	12.12%	2019	8.34%	11.77%	2020	-0.69%	-0.35%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18.10%	2018	-	-	미생산	-	-
노인 서비스 인지율		23.30%	2018	-	-	2021	-	-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5.25	8.46	2019	6.67	14.57	2020	1.42	6.11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3.93	9.23	2019	5.71	12.69	2020	1.78	3.46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미생산	16.2%	2018	72.7%	69.7%	2021	-	53.5%

□ 돌봄_장애인

- 장애인돌봄과 관련해서 남양주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 관련 시설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시설 종사자 수는 경기도 평균이 절반 수준이며,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경기도 평균과 달리 감소하는 추세임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경기도 평균은 증가). 이로 인해 1년 사이 남양주시 상황은 경기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
- 지역사회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경기도 평균에 비해 증가속도(경기도-2.47 증가, 남양주-2.8증가)는 앞서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 평균에 비해 67.6% 수준에 불과

〈표 II-28〉 장애인돌봄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항목	사회보장지표						변화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장애인구 비율	4.20%	4.40%	2019	4.23%	4.46%	2020	0.03%	0.06%
중증장애인구 비율	1.60%	1.60%	2019	1.60%	1.60%	2020	0	0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5.2	2.9	2019	5.5	2.7	2020	0.3	-0.2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1.8	1.3	2019	2.1	1.6	2020	0.3	0.3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5.7	3.9	2019	6.3	3	2020	0.6	-0.9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0.90%	62.40%	2013	77.60%	-	2018	16.70%	-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3.09	0.96	2019	5.56	3.76	2020	2.47	2.8
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13.55%	5.54%	2019	13.47%	5.88%	2020	-0.08%	0.34%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23.10%	2018	-	-	미생산	-	-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	21.90%	2018	-	-	2021	-	-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	26.10%	2018	-	-	미생산	-	-

□ 건강

- 건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경기도 평균이 하락함에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예방접종률, 보건의료예산 등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당뇨병 진단율 등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높지만 수치개선의 수준이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혈압 진단율 등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좋아지는 항목도 있음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등은 경기도 평균이 하락하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좋아지고 있음
- 그러나 우울감 경험률, 비만율 등에서는 개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흡연율 등은 개선이 나타나지 않음
 -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을 통해 자료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가운데 남양주시 2개 보건소 간 격차도 나타나고 있음

- 우울감 경험률과 비만율, 그리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고위험음주율과 기준의 차이가 있음)에서는 남양주시가 모두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9〉 건강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1.59%	2.02%	2019	1.69%	2.21%	2020	0.10%	0.19%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91.3%	90.7%	2019	92.1%	92.5%	2020	0.80%	1.80%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40.50%	35.60%	2019	42.40%	40.40%	2020	1.90%	4.80%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77.1%	74.3%	2019	74.4%	71.6%	2020	-2.7%	-2.7%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20.2%	22.7%	2018	17.6%	24.0%	2020	-2.60%	1.30%
건강생활 실천율	35.8%	32.6%	2019	32.5%	38.2%	2020	-3.30%	5.60%
현재 흡연율	19.9%	20.4%	2019	19.10%	20.40%	2020	-0.80%	0.00%
고위험음주율	14.5%	12.8%	2019	13.8%	12.3%	2020	-0.70%	-0.50%
우울감경험률	6.2%	10.4%	2019	6.5%	8.4%	2020	0.30%	-2.00%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1.6%	34.3%	2019	40.8%	42.3%	2020	-0.80%	8.00%
비만율(자가보고)	33.6%	39.1%	2019	31.6%	34.0%	2020	-2.00%	-5.10%
고혈압 진단 경험률	20.3%	21.0%	2019	19.5%	18.9%	2020	-0.80%	-2.10%
당뇨병 진단 경험률	8.1%	10.2%	2019	8.0%	8.4%	2020	-0.10%	-1.80%
연간 미충족의료율	9.0%	13.5%	2019	5.90%	12.20%	2020	-3.10%	-1.30%
의료서비스 만족도	74.4%	64.7%	2018	-	-	미생산	-	-

□ (평생)교육

-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남양주는 교육기관, 프로그램, 교강사 수에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13% 수준에 불과
- 1만명 당 평생교육기관수는 개선이 되고 있으나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기관 수는 경기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
-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경기도 평균이 35.55개임에 비해, 남양주시는 7.89개에 불과하고, 교강사 수는 경기도 평균이 10.24명임에 비해 4.29명에 불과
- 이와 같은 인프라의 부족은 평생학습 참여율과 연결되며, 경기도 평균이 19.1%임에

비해 남양주시 평생학습 참여율은 2.5%에 불과한 실정임

〈표 II-30〉 건강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0.62	0.31	2019	0.67	0.33	2020	0.05	0.02
학령기 아동 1만 명당 학교 수	14.45	12.36	2019	14.75	12.66	2020	0.3	0.3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3,132	13,868	2019	2,062	4,942	2020	-1070	-8926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7.95	9.14	2019	35.55	7.89	2020	7.6	-1.25
1만 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9.94	4.71	2019	10.24	4.29	2020	0.3	-0.42
평생학습 참여율	14.2%	2.7%	2019	19.1%	2.5%	2020	0.049	-0.002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미생산	1.92	2018	-	-	2021	-	-
교사 1인당 학생 수	16.15	15.63	2019	15.81	15.23	2020	-0.34	-0.4
학급당 학생 수	26	23.3	2019	25.4	22.8	2020	-0.6	-0.5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1.80%	1.47%	2019	1.90%	1.55%	2020	0.10%	0.08%
학교생활의 어려움	-	1.23 (6점)	2018	31.6 (100점)	22.3 (100점)	2021	-	-

□ 주거

- 주거와 관련한 지표는 주택수, 보급률, 상하수도 등 지표가 존재하나, 본 연구의 과업(복지기준선)과는 큰 연관성은 부족

〈표 II-31〉 주거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인구 1천 명당 주택수	328.919	333.252	2019	334.781	337.221	2020	5.86	3.969
주택보급률	87.74%	94.63%	2019	88.73%	95.93%	2020	0.99%	1.30%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464,458	30,876	2019	-	-	미생산	-	-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431,632	13,518	2019	394,097	5,843	2020	-	-
1인당 주거면적	28.2㎡	28.0㎡	2019	29.4㎡	28.3㎡	2020	-	-

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상수도 보급률	98.5%	97.1%	2019	-	-	미생산	-	-
하수도 보급률	94.6%	96.6%	2019	-	-	미생산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353,612	25,857	2019	-	-	미생산	-	-
주거비 부담 인식률	미생산	26.2%	2018	-	-	미생산	-	-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미생산	17.7%	2018	-	-	미생산	-	-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미생산	15.3%	2018	-	-	미생산	-	-

4. 복지재정 특성

- 재정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남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야를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부족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임
- 그러나 단순히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분류체계로는 포괄적이고 이질적 대상자들이 예산에 통합되어 있기에 분석의 한계 존재
 -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이 불가능하며, 전통적 사고에 따라 아동·보육·여성·가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나타남
 - 또한, 대상자의 유사성이 거의 없는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의 부문으로 묶여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연금 등 예산규모가 큰 노인부문이 전체 부문 예산을 대표하게 됨
 -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기타적 의미로 받아들여 특히 지방정부 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특정 부문에 포함시키기 모호하거나 신규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따라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새로운 예산분류체계를 통해 복지예산의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①대상자, ②지원방식에 따라 예산분류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명료한 예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산의 구분방식의 재구조화와 함께 세부 부문별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를 파악하여 시군별 복지재정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며,
 - 사회경제적 변수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의 영향력 정도 및 향후 자체복지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정책헌신도(policy commitment)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자체사회복지사업지출에서 특정 사업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윤성원·양재진, 2019)
 - 이 비율이 높다면, 해당 분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체 사회복지지출사업은 복지 관련 지출사업 중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전혀 없이 순수 시군구비만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의미
 - 민효상·신동길(2021)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2020년 기준)을 새로운 예산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고, 세부부문별/시군별 복지재정 특성을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남양주시 복지분야의 재정특성 파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고자 함

1) 분야별 세출예산

- 전반적으로 남양주시는 2015년에 비해 사회복지의 예산비중이 증가(2.69%) 하였으며, 비중 또한 4.5.5%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높은 수준임
 -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13개 분야, 52개 부문을 바탕으로 2015년과 2020년의 예산변화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임
 - 사회복지분야는 8개의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양주시는 이 가운데 보육·가족 및 여성과 함께 노인·청소년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2〉 남양주시 분야 및 부문별 예산 변화(2015, 2020년)

(단위: 백만 원, %, %p)

분야	2015		2020		증감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일반공공행정(010)	37,084	4.82	83,471	5.53	46,387	0.71
공공질서 및 안전(020)	4,338	0.56	11,470	0.76	7,132	0.20
교육(050)	15,157	1.97	38,873	2.58	23,716	0.60
문화 및 관광(060)	44,427	5.78	90,517	6.00	46,090	0.22
환경(070)	51,187	6.65	92,876	6.15	41,689	△ 0.50
사회복지(080)	328,975	42.76	686,107	45.45	357,132	2.69
기초생활보장(081)	36,408	4.73	73,670	4.88	37,262	0.15
취약계층지원(082)	28,411	3.69	57,030	3.78	28,619	0.08
보육·가족 및 여성(084)	139,143	18.09	269,552	17.86	130,409	△ 0.23
노인·청소년(085)	112,862	14.67	259,755	17.21	146,893	2.54
노동(086)	2,855	0.37	5,308	0.35	2,453	△ 0.02
보훈(087)	3,127	0.41	7,717	0.51	4,590	0.10
사회복지일반(089)	6,169	0.80	13,075	0.87	6,906	0.06
보건(090)	19,866	2.58	33,649	2.23	13,783	△ 0.35
농림해양수산(100)	24,277	3.16	31,059	2.06	6,782	△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3,921	0.51	8,819	0.58	4,898	0.07
교통 및 물류(120)	79,048	10.28	177,262	11.74	98,214	1.47
국토 및 지역개발(140)	39,184	5.09	65,751	4.36	26,567	△ 0.74

자료: 민효상·신동길(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 재원별/단위사업 유형별 예산분류

- 단위사업 예산분류기준의 단일화: 기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고 정책사업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지한 채, 단위사업을 재분류하여 단일체계를 구성
 - 기존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부문-정책사업의 분류기준은 준수하여, 분야(사회복지)-부문(기초생활보장 등 8개 부문)-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구조는 유지
 - (기준 1) 사업대상별 부문 세분화
 - 기존의 사회복지예산 분야(080) 및 부문(081~089)을 해체하지 않는 단기적 범위에서는 세부분야를 추가하여 예산코드를 4자리화
 - (기준 2-1) 지원방식에 따른 구분(현금/서비스지원-이용자/시설)
 - 지원유형을 현금수당/서비스지원으로 크게 분류하고, 서비스지원에 대하여 이용자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2) 중앙정부 등 사업유형에 따른 구분
 - 중앙정부의 사업유형이 명확한 부문의 경우 이를 활용하며, 이외 특수성에 따라 세부부문의 추가(다문화, 청년 등)를 통해 세분화
 - (기준 3) 재원유형에 따른 구분
 - 예산분류체계의 기준에 재원유형에 따른 구분기준을 추가하여 광역 또는 기초정부의 복지확대 노력 정도와 전략적 목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
- 상기의 기준에 따라 남양주시의 복지예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와 같음

〈표 II-33〉 남양주시 사회복지분야 세부부문별 사업수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 %p)

부문	세부부 문	지원유형	국고보조		순수광역		광역보조		기초자체		총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계			166 (32.11)	784,097 (77.50)	27 (5.22)	36,683 (3.63)	146 (28.24)	93,689 (9.26)	162 (31.33)	97,226 (9.61)	517 (100.00)	1,011,695 (100.00)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8 (1.55)	64,295 (6.36)	0 (0.00)	0 (0.00)	0 (0.00)	0 (0.00)	6 (1.16)	5,154 (0.51)	14 (2.71)	69,449 (6.86)
		긴급복지	2 (0.39)	16,356 (1.62)	0 (0.00)	0 (0.00)	2 (0.39)	1,789 (0.18)	0 (0.00)	0 (0.00)	4 (0.77)	18,145 (1.79)
		저소득 자활지원	8 (1.55)	3,775 (0.37)	1 (0.19)	8 (0.00)	3 (0.58)	59 (0.01)	0 (0.00)	0 (0.00)	12 (2.32)	3,842 (0.38)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현금수당	6 (1.16)	13,683 (1.35)	1 (0.19)	12 (0.00)	5 (0.97)	1,079 (0.11)	1 (0.19)	5 (0.00)	13 (2.51)	14,779 (1.46)
		이용자지원	13 (2.51)	22,250 (2.20)	0 (0.00)	0 (0.00)	5 (0.97)	1,670 (0.17)	21 (4.06)	493 (0.05)	40 (7.74)	24,413 (2.41)
		공급자지원	3 (0.58)	7,290 (0.72)	1 (0.19)	7 (0.00)	19 (3.68)	9,287 (0.92)	7 (1.35)	3,993 (0.39)	30 (5.80)	20,577 (2.03)
	기타	기타 취약계층	6 (1.16)	186,164 (18.40)	2 (0.39)	25 (0.00)	2 (0.39)	333 (0.03)	7 (1.35)	48,427 (4.79)	17 (3.29)	234,949 (23.22)
보육 · 가족 및 여성	아동 · 보육	현금수당	12 (2.32)	151,745 (15.00)	1 (0.19)	25 (0.00)	7 (1.35)	7,566 (0.75)	3 (0.58)	39 (0.00)	23 (4.45)	159,375 (15.75)
		이용자지원	8 (1.55)	30,707 (3.04)	3 (0.58)	34,258 (3.39)	4 (0.77)	4,612 (0.46)	5 (0.97)	54 (0.01)	23 (4.45)	69,631 (6.88)
		공급자지원	33 (6.38)	51,701 (5.11)	2 (0.39)	109 (0.01)	26 (5.03)	19,324 (1.91)	23 (4.45)	8,639 (0.85)	84 (16.25)	79,773 (7.89)
	여성 · 가족 복지	현금수당	3 (0.58)	96 (0.0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0.58)	96 (0.01)
		이용자지원	2 (0.39)	23 (0.00)	0 (0.00)	0 (0.00)	8 (1.55)	315 (0.03)	7 (1.35)	30 (0.00)	18 (3.48)	368 (0.04)
		공급자지원	10 (1.93)	1,065 (0.11)	2 (0.39)	26 (0.00)	6 (1.16)	361 (0.04)	0 (0.00)	0 (0.00)	18 (3.48)	1,452 (0.14)
		다문화지원	4 (0.77)	719 (0.07)	1 (0.19)	30 (0.00)	11 (2.13)	228 (0.02)	3 (0.58)	505 (0.05)	19 (3.68)	1,482 (0.15)
	노인 · 청소년	노인 복지	현금수당	2 (0.39)	199,547 (19.72)	0 (0.00)	0 (0.00)	2 (0.39)	852 (0.08)	2 (0.39)	256 (0.03)	6 (1.16)
이용자지원			4 (0.77)	18,172 (1.80)	0 (0.00)	0 (0.00)	10 (1.93)	33,573 (3.32)	4 (0.77)	233 (0.02)	20 (3.87)	51,978 (5.14)
공급자지원			4 (0.77)	1,207 (0.12)	3 (0.58)	63 (0.01)	15 (2.90)	6,445 (0.64)	9 (1.74)	1,071 (0.11)	34 (6.58)	8,786 (0.87)
청소년 복지		현금수당	1 (0.19)	18 (0.00)	0 (0.00)	0 (0.00)	1 (0.19)	4 (0.00)	0 (0.00)	0 (0.00)	2 (0.39)	22 (0.00)
		이용자지원	10 (1.93)	547 (0.05)	0 (0.00)	0 (0.00)	4 (0.77)	657 (0.06)	10 (1.93)	368 (0.04)	26 (5.03)	1,572 (0.16)

부문	세부부 문	지원유형	국고보조		순수광역		광역보조		기초자체		총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계			166 (32.11)	784,097 (77.50)	27 (5.22)	36,683 (3.63)	146 (28.24)	93,689 (9.26)	162 (31.33)	97,226 (9.61)	517 (100.00)	1,011,695 (100.00)
		공급자지원	2 (0.39)	432 (0.04)	1 (0.19)	15 (0.00)	1 (0.19)	28 (0.00)	6 (1.16)	12,637 (1.25)	10 (1.93)	13,112 (1.30)
노동	노동	공공근로	1 (0.19)	176 (0.02)	0 (0.00)	0 (0.00)	0 (0.00)	0 (0.00)	1 (0.19)	1,326 (0.13)	2 (0.39)	1,502 (0.15)
		이용자지원	7 (1.35)	9,900 (0.98)	1 (0.19)	200 (0.02)	3 (0.58)	566 (0.06)	6 (1.16)	221 (0.02)	18 (3.48)	10,887 (1.08)
		공급자지원	2 (0.39)	102 (0.01)	0 (0.00)	0 (0.00)	1 (0.19)	552 (0.05)	2 (0.39)	79 (0.01)	5 (0.97)	733 (0.07)
보훈	보훈	보훈	0 (0.00)	0 (0.00)	3 (0.58)	1,452 (0.14)	1 (0.19)	27 (0.00)	20 (3.87)	6,229 (0.62)	24 (4.64)	7,708 (0.76)
주택	주택	주택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사회 복지 일반	사회 복지 일반	전달체계 행정	4 (0.77)	513 (0.05)	1 (0.19)	5 (0.00)	3 (0.58)	87 (0.01)	3 (0.58)	259 (0.03)	12 (2.32)	864 (0.09)
		사회복지 서비스	5 (0.97)	1,890 (0.19)	0 (0.00)	0 (0.00)	2 (0.39)	96 (0.01)	10 (1.93)	4,006 (0.40)	18 (3.48)	5,992 (0.59)
		복지시설 지원	1 (0.19)	2 (0.00)	3 (0.58)	223 (0.02)	4 (0.77)	179 (0.02)	3 (0.58)	2,071 (0.20)	12 (2.32)	2,475 (0.24)
	청년 복지	현금수당	2 (0.39)	268 (0.0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0.39)	268 (0.03)
		이용자지원	3 (0.58)	1,454 (0.14)	1 (0.19)	225 (0.02)	1 (0.19)	4,000 (0.40)	2 (0.39)	1,093 (0.11)	7 (1.35)	6,772 (0.67)
		공급자지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19)	38 (0.00)	1 (0.19)	38 (0.00)
	기타	기타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자료: 민효상·신동길(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국고 및 광역보조사업은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확대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지방대
응비를 의미하며, 기초자체사업이 남양주시의 복지 세부부문의 정책적 방향으
로 볼 수 있음
 - 앞선 기준에 따라 남양주시 자체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단순 사업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장애인복지는 이용자 지원, 아동·보육은 공급자 지
원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부부문별로 편차가 있음

〈표 II-34〉 남양주시 사회복지분야 세부부문별 자체복지사업 목록

부문	세부 부문	지원유형	단위사업명
기초 생활 보장 (081)	기초 생활 보장 (0811)	국민기초 생활보장 (08111)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교육 급여, 의료급여사업 지원,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긴급복지 (08112)	
		저소득 자활지원 (08113)	
취약 계층 지원 (082)	장애인 복지 (0821)	현금수당 (0821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 이용자지원 (08212)	장애인 전용목욕장 운영,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 시각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방과후 프 로그램 운영,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 장애인단체행사지원, 지체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장애인 직업기능 향상지원, 신체장애인 단체지원, 교통장애인 단체지원, 농아인 단체지원, 발달장애인 단체지원, 신장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정보화 지원, 장애 인 예술 활동지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구입,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 원, 한센인 단체 지원, 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부모회 단체지원
		서비스 공급자지원 (08213)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운영, 장애인보장 구수리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지원 위원회 운영
	기타 취약 계층 (0822)	기타 취약계층 지원 (08221)	취약계층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관리, 금곡동복지회관 관리, 재해 구호물자 관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법률소외계층 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084)	아동 ·보육 (0841)	현금수당 (08411)	저소득층아동 능력개발비,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 활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자지원 (08412)	공공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보육사업 운영, 영유아 감성프로그램 운영, 아동복지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서비스 공급자지원 (08413)	어린이비전센터 등 운영,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복 지시설 운영 지원, 동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 비 추가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원장 처우개선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 전문 심리·정서 치료센터 운영, 동지역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운 영비 지원, 어린이집 전기안전 검사비 지원,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지원, 평가인증 어 린이집 환경개선, 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다함께돌봄 운영지원(시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과년도),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장학 실비보 상금 지원,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여성 ·가족 복지 (0842)	현금수당 (08421)	
		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공무원 성인지 교육 운영, 공무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차량운영비

부문	세부 부문	지원유형	단위사업명
		이용자지원 (08412)	(보육정책과 업무 추진), 성희롱 고충 상담 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
		서비스 공급자지원 (08413)	
		다문화지원 (08424)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노인 · 청소년 (085)	노인 복지 (0851)	현금수당 (08511)	화장장려금 지원,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비 지원
		서비스 이용자지원 (08512)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회분회운영, 시니어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노인안전환경지원 사업
		서비스 공급자지원 (08513)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노인교실 운영, 장사시설 관련 보수 및 정비, 경로당 소독 지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시설 지도 및 점검 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청소년 복지 (0852)	현금수당 (08521)	현금수당 (08411)
		서비스 이용자지원 (08522)	글로벌 청소년 육성, 청소년전용공간'Under18(진건)'조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남양주시 청소년 예능대회, 청소년전용공간'Under18(퇴계원)'조성, 학교 폭력예방 사업 운영, 늘푸른 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서비스 공급자지원 (08523)	청소년수련관 건립,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 이전설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 버스운영
노동 (086)	노동 (0861)	공공근로 (08611)	공공근로사업
		서비스 이용자지원 (08612)	노동단체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사회성과보상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공간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서비스 공급자지원 (08613)	일자리카페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보훈 (087)	보훈 (0871)	보훈 (08711)	참전명예수당(시비)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회관 운영, 현충시설 관리, 보훈가족 위문 보상, 보훈단체 지원, 남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상이군경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무공수훈자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고엽제전우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시지회, 광복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보훈테마공원 조성, 국경일 및 보훈행사 지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
주택 (088)	주택 (0881)	주택 (08811)	

부문	세부 부문	지원유형	단위사업명
사회 복지 일반 (089)	사회 복지 일반 (0891)	전달체계· 행정 (0891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
		서비스 이용자지원 (08912)	복지재단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특장차량 무료셔틀버스 이동 지원, 사회보장정 보시스템 활용,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지원, 민·관복지허브시스템 운영, 위원회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소외계층 위문
		서비스 공급자지원 (08913)	권역별 사회복지관(희망케어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청년 복지 (0892)	현금수당 (08921)	
		서비스 이용자지원 (08922)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취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 공급자지원 (08923)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기타 (0893)	기타 (08931)

자료: 민효상·신동길(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단순히 사업수가 아닌 예산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단위사업 유형별 예산 및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를 통해 남양주시 복지 세부부문별 정책방향을 파악
 - 2020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단위사업유형별로 재분류한 예산을 기준으로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시는 기타취약계층지원의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기타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남양주시의 긴급지원금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타 지역과 달리 자체복지사업 중 정책헌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다른 단위사업유형에서는 대부분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II-35〉 남양주시 사회복지분야 단위사업유형별 정책현신도(예산집중도)

(단위: 백만원, %)

부문	세부 부문	지원유형	경기도 시군 평균		남양주시		격차	
			총 사회복지 예산기준	자체복지 예산기준	총 사회복지 예산기준	자체복지 예산기준	총 사회복지 예산기준	자체복지 예산기준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6.85%	0.86%	6.86%	5.30%	0.01%	4.44%
		긴급복지	0.92%	0.02%	1.79%	0.00%	0.87%	-0.02%
		저소득 자활지원	0.60%	0.02%	0.38%	0.00%	-0.22%	-0.02%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현금수당	1.68%	0.12%	1.46%	0.01%	-0.22%	-0.11%
		이용자지원	3.44%	4.74%	2.41%	0.51%	-1.03%	-4.23%
		공급자지원	3.33%	5.19%	2.03%	4.11%	-1.30%	-1.08%
	기타	기타 취약계층	14.94%	6.88%	23.22%	49.81%	8.28%	42.93%
보육 · 가족 및 여성	아동 · 보육	현금수당	15.15%	3.73%	15.75%	0.04%	0.60%	-3.69%
		이용자지원	7.28%	2.70%	6.88%	0.06%	-0.40%	-2.64%
		공급자지원	8.04%	9.87%	7.89%	8.89%	-0.15%	-0.98%
	여성 · 가족 복지	현금수당	0.01%	0.00%	0.01%	0.00%	0.00%	0.00%
		이용자지원	0.25%	2.48%	0.04%	0.03%	-0.21%	-2.45%
		공급자지원	0.41%	0.84%	0.14%	0.00%	-0.27%	-0.84%
		다문화지원	0.36%	0.66%	0.15%	0.52%	-0.21%	-0.14%
노인 · 청소년	노인 복지	현금수당	18.84%	0.92%	19.83%	0.26%	0.99%	-0.66%
		이용자지원	5.76%	3.94%	5.14%	0.24%	-0.62%	-3.70%
		공급자지원	3.22%	12.98%	0.87%	1.10%	-2.35%	-11.88%
	청소년 복지	현금수당	0.02%	0.10%	0.00%	0.00%	-0.02%	-0.10%
		이용자지원	0.86%	7.56%	0.16%	0.38%	-0.70%	-7.18%
		공급자지원	0.98%	4.72%	1.30%	13.00%	0.32%	8.28%
사회 복지 일반	사회 복지 일반	전달체계·행정	0.36%	0.88%	0.09%	0.27%	-0.27%	-0.61%
		사회복지 서비스	0.73%	1.78%	0.59%	4.12%	-0.14%	2.34%
		복지시설지원	0.76%	6.17%	0.24%	2.13%	-0.52%	-4.04%
	청년 복지	현금수당	0.66%	0.13%	0.03%	0.00%	-0.63%	-0.13%
		이용자지원	0.45%	1.75%	0.67%	1.12%	0.22%	-0.63%
		공급자지원	0.06%	0.27%	0.00%	0.04%	-0.06%	-0.23%
	기타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민효상·신동길(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III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방안

1. 복지기준선의 의미와 필요성
2.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전략 및 방법
3. 주요영역별 복지기준선

Ⅲ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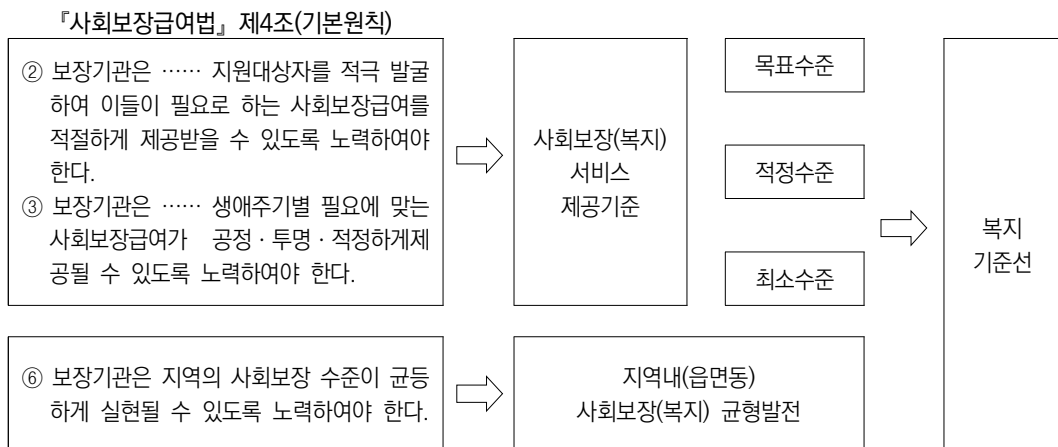
1. 복지기준선의 의미와 필요성

□ 왜 복지기준선인가?

-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송파 3모녀 사건 이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 문제발생
 - 또한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에 정립 요구가 높아짐
 - 이에 궁극적으로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법을 신설
 - 동법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과 보장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명시
-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사회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
 - 동법 제4조 1항에서는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
- 또한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제공,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의 균등한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

- 동법 제4조 2항에서 6항은 보장기관의 의무 및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균등한 사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균등한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준(지향점)을 설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실천전략(전략과제)을 수립해야 함
 - 복지기준선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균등하게 실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복지기준선의 지향점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수준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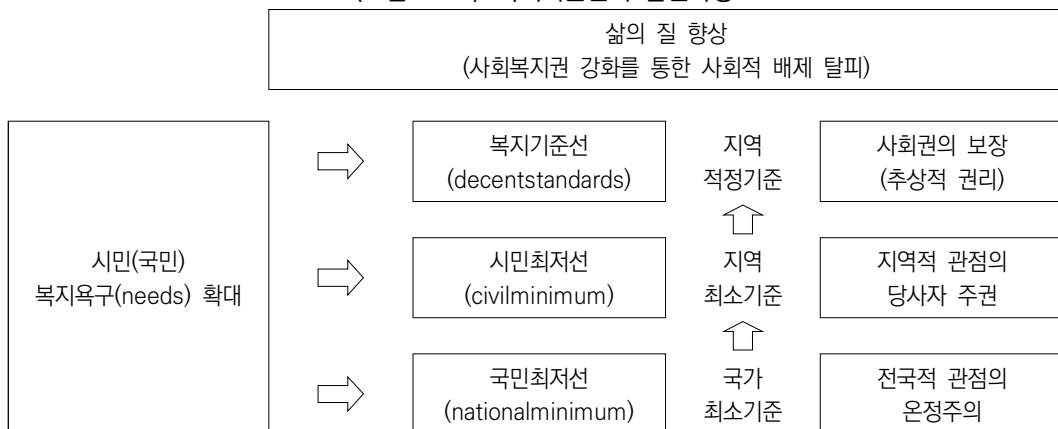
〈그림 Ⅲ-1〉 복지기준선 수립 근거



□ 복지기준선은 무엇인가?

- 복지기준선은 지역사회가 도달해야할 사회보장 수준을 의미하며, 복지기준선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수준이 결정되어 왔음
 - 왕정시대에서의 복지는 은급성·시혜성이 강한 것으로, 왕이나 권력자가 피지배계층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입헌군주제가 시행된 이후 영국 등 유럽에서부터 국민(시민)의 권리가 증진됨에 따라 복지(사회보장) 또한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리잡음
 - 초창기에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식주 및 거주환경 등이 하나의 복지기준선으로 볼 수 있음
 - 권리로서 복지권이 인정되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국민최저선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 관점에서 국가온정주의에 기반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국가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이동되고, 지방자치제 등이 발전함에 따라 이후에는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핵심으로 자리잡게 됨
 - 이때부터는 국가가 제시하는 국민최저선보다 상위에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복지기준을 제시하기 시작
 -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시민최저선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후 확대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기준선은 초창기 서울 등 큰 광역정부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초정부 단위에서는 많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Ⅲ-2〉 복지기준선의 발전과정



- 국민최저선이 최저기준을 지향하고 있다면, 시민최저선은 적정기준을 지향하고 있으며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은 수준, 주체, 재원부담, 적용대상 등에서 차이가 존재
 - 최저기준은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형태가 많이 나타남
 - 최저기준은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초창기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적정기준은 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가 비단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전 계층에게 확대된 보편성을 많이 보이고 있음
 - 적정기준은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접어드는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며, ILO 고용재해급여협약 등 복지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하면서 보편성을 보임
- 적정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국적 최소기준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최소한이나 그 이상을 목표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음

〈표 Ⅲ-1〉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비교

유형	최저기준	적정기준
수준	현실의 국가 및 도시발전수준을 고려하되 최소수준 제공	시민으로 생활영역에 있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기준 제공
책임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부, 기업, 개인, 가족 공동의 사회적 책임
재원부담	공공재정, 조세에 의한 부담	조세의 사회적 공동부담 및 개인 부담
적용대상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상의 사회적 해결 필요 계층
권리성격	시민이 청구가 가능한 구체적 권리	급여청구권이 없는 추상적 권리
운영원칙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에서 시민의 민주적 참여	
영역	소득, 고용,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보장영역	
예시	Beveridge 보고서,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ILO 고용재해급여협약,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등

□ 주요 해외사례

- 전국적 단위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정책목표로 채택되어 근대 복지국가 형성을 견인하였으며, 이후 복지최저선은 복지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발전

○ 지역단위의 시민최저선(civil minimum)

- 국민최저선의 개념 이후 국가가 설정한 기준은 지역의 현실적인 생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비판
- 일본 동경은 시민최저선 개념(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기준)을 도입

○ 최저기준을 넘어 적정기준으로의 변화

-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1960년대부터 복지정책의 목표가 ‘적정한 급여수준’으로 변화함에 따라 ILO에서도 사회보장 기준을 ‘적정기준’으로 업그레이드
- 지역단위는 미국 시애틀(복지사업투자계획) 및 영국 런던(런던플랜) 등

□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정부 사례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세종, 대전, 경기 등 광역정부를 중심으로 복지기준선을 설정한 사례가 많으며, 기초 단위에서는 전북 완주에서 설정

- 서울시는 ‘서울시 복지기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①소득분야, ②주거분야, ③돌봄분야, ④건강분야, ⑤교육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워크숍, 시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설정
 - ① 소득분야: 서울에 맞는 최저생계 보장, 중위소득 50% 수준 이상 확보 지원
 - ② 주거분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주거공간 면적 등을 기준으로 설정
 - ③ 돌봄분야: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및 품질
 - ④ 건강분야: 필수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격차해소
 - ⑤ 학령기 교육 기본권 보장,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
- 부산시는 시민 최자·적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일반복지, 동네복지, 생애주기 등 다양한 영역을 구분하여 복지기준선을 설정
- 광주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시민복지기준선 설정
- 대전시는 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등 6개 영역을 선정하고 시민의견수렴 후 복지기준선 발표
- 세종시는 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해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복지기준선을 제시
- 완주군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소득, 돌봄(노인, 장애인, 아동)영역에 대해 최저생활 보장제도를 도입

〈표 Ⅲ-2〉 주요 복지기준선 설정 사례

구분	추진년도	주요영역	추진체계	특징
광역	서울	2012	소득, 주거, 돌봄(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건강, 교육	시민참여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부산	2015	- 일반기준부문(소득, 고용, 돌봄, 건강, 교육, 주거) - 생애주기별(영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 동네생활복지기준부문(기초소득 보장, 고용, 돌봄, 건강, 교육, 주거, 생활여건, 안전, 공동체)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와 시 담당부서 검토 등을 통해 진행
	광주	2015	소득, 주거, 돌봄(총괄,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건강, 교육	(학계, 복지현장, 시민단체) 추진위원회 구성
	대전	2016	돌봄(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소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세종	2015	복지서비스(영유아 및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보건사회연구원과 시 담당부서 검토 등
	경기	2016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인프라	시군토론회, 공무원·현장전문가 자문단, 도민정책단 구성
기초	완주	2016	소득, 돌봄(노인, 장애인, 아동)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군민의견수렴

- 그러나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정부의 복지기준선 설정과 관련해서는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하고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시된 전략과제가 현실화되지 못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

2.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전략 및 방법

□ 남양주 복지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기존 복지기준선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조응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통한 복지기준선을 세분화하여 제시
- 2022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변화되는 지방자치 환경에서 복지분권의 관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복지기준선 마련
 - 제헌헌법에 의거 1949년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을 규정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함
 -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제시하면서 지방분권개헌이 논의되었으나, 개헌이 무산된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
 - 행정안전부는 2018년 6월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었으며, 이후 수정·보완한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 현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된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1월 입법예고(2018.11.14.~12.24.),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2019.3.26.)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폐기
 - 2020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 이후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확정하고,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하기로 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①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④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중앙-지방간 협력(제164조)에서는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 신설
- 무엇보다 복지분야에서 전부개정된 법률에서 주목할 것은 사무배분 원칙과 준

수의 규정에 맞춘 복지사무 재배분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하여 ‘기본원칙’, ‘사무범위’, ‘사무배분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중앙→광역→기초의 하향식 기능분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
 - 동법 제11조에서는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사무를 배분하는 기준을 지시하며,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그러나 광역과 기초정부의 사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동법 제10조에서 사무가 서로 경합할 경우 기초정부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개정법률에서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제11조)에서 ①중복배제의 원칙, ②보충성의 원칙, ③포괄적 배분 원칙 등을 제시하여 기존법과 큰 차이가 나타남
 - 중복배제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
 - 보충성의 원칙: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정부의 사무로 하며, 기초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 광역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배분
 - 포괄적 배분 원칙: 사무의 배분 또는 재배분에 있어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조항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변화된 지방자치법 하에서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정부가 우선이 되며,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가 기초정부의 사무가 됨을 의미
- 따라서 지방분권에 따라 기초정부인 남양주시는 독립성의 원리에 따라 일상생활서비스 중심의 복지기준선을 설정해야 하며, 광역정부 및 중앙정부는 보충성 원리 및 보편성 원리에 따라 기준선을 설정해야 함

-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헌법개정 및 복지분권의 차원에서 복지기준선 대응체계 구축(기준선영역 및 전략과제, 광역-기초간 협력체계 등)과 연관성이 높음
- 중앙정부는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국민최저선을 설정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광역정부는 사회기반투자를 중심으로 기초정부 간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경기도는 이미 경기복지기준선을 설정하였기에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추진
- 남양주시는 동일한 적정기준이라 할지라도 광역정부(경기도)에서 제시한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그림 Ⅲ-3〉 복지분권과 복지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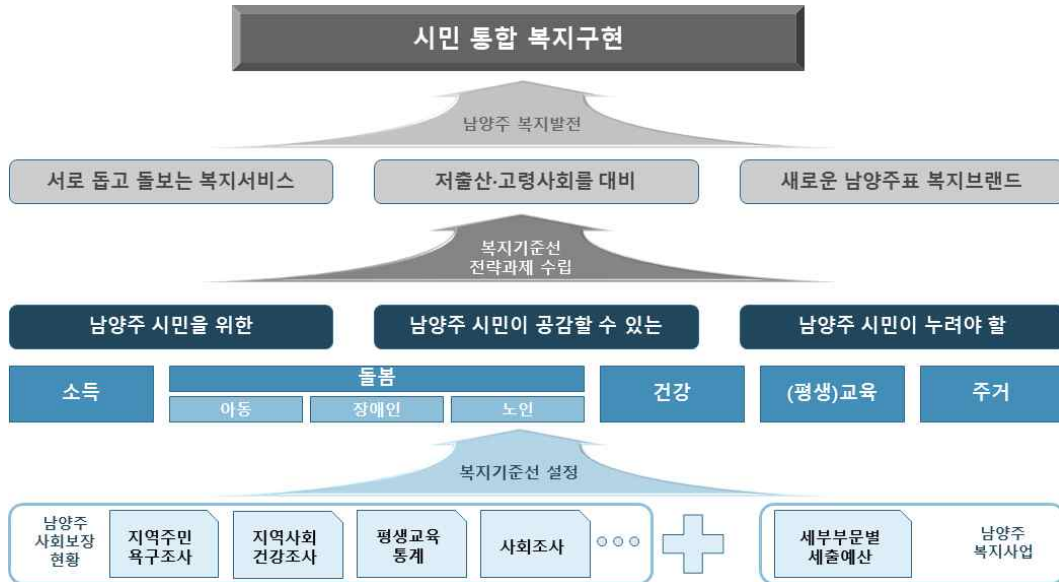
기준(standards)	복지사무유형	근거	담당주체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일상생활서비스	독립성 원리 (지방분권)	기초정부
경기복지기준선 (decent standards)	사회기반투자	보충성 원리 (정부간 협력)	광역정부 (현금성수당)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기초생활보장	보편성 원리 (전국적 평균)	중앙정부

- 남양주시 복지기준선은 ① 적정기준의 설정, 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③ 사회보장영역으로의 확대 등이 필수적인 요소임
- 또한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등 환류체계를 통해 실효성이 높은 복지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정치적 지원이 필요함
- 단순히 복지기준선의 도입이 아닌 후속작업으로 실효화 및 고도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 이를 위해 의회 및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편성 등 실체화된 노력이 필요
- 무엇보다 2022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시기이며, 남양주 복지기

기준선을 현실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

-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수립, 연차별시행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
- 행정통계 자료 및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통해 달성 여부 확인 가능

〈그림 Ⅲ-4〉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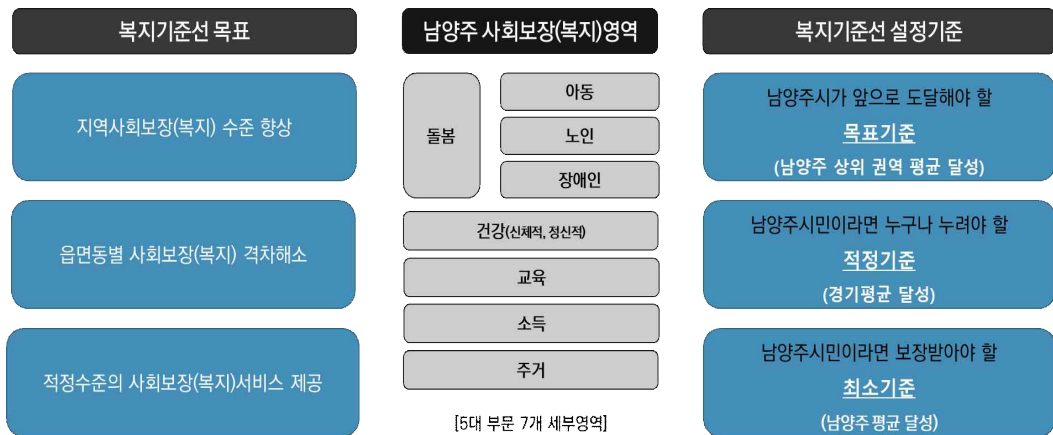
□ 남양주 복지기준선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목표) 남양주시 복지기준선의 목표는 ①지역사회보장(복지)수준 향상, ②읍면동별 사회보장 격차 해소, ③적정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
 - 기준선 설정의 최종목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도달하는 것으로 현재 남양주시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 목표를 가짐
 - 또한 지역 내 사회보장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읍면동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여,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남양주 내에서 차별이 없는’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2차적 목표임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경기도)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경기도의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경기도 사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3가지 목표는 남양주시 복지기준선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활용되며, ① 최소기준, ②적정기준, ③목표기준의 3가지 기준선으로 제시
 - 최소기준은 ‘남양주 시민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수준으로 남양주시 평균을 의미
 - 적정기준은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을 의미
 - 최소기준과 적정기준은 불변이 아니며, 현재 남양주시 사회보장 수준이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기준을 남양주시 평균, 적정기준을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 그러나 남양주시 사회보장 수준이 향상되어 경기도 평균을 상회한다면, 향후 최소기준이 경기도 평균, 적정기준이 남양주시 평균으로 변화
 - 향후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평균이 적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서비스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목표기준은 ‘남양주시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으로 남양주시 4개 권역 중 가장 높은 권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의미
 - 현재 남양주시 내에서 권역별 수준은 경기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인구, 재정상황, 인프라 등 타 시군과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또한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목표기준은 남양주시 내에서 가장 사회보장 여건이 좋은 권역을 기준으로 설정
 - 만약 목표기준을 경기도 내 상위 3개 시군으로 설정한다면, 재정 및 인프라 등 제반여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됨
 - 또한 인접지역 및 유사인구수의 시군을 목표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이는 설정된 지역보다 남양주시가 사회보장 여건 및 능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결과임⁶⁾

6) 일부에서는 복지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 지역으로 인구이동(이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보다 낮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인접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 이로인해 복지기준선 설정에서 인접지역의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움. 이른바 티부가설(Tiebout가설)은 주민들이 지방정부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접지역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의미도 가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많음.

〈그림 III-5〉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목표, 영역, 선정기준



- 복지기준선의 영역설정은 타 지역에서의 사례와 복지영역임을 감안하여, ①소득, ②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③건강, ④(평생)교육, ⑤주거 등 5가지로 설정
 - 소득영역은 중앙정부 등 국민최저선과 관련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빈곤율과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것임
 - 일반적으로 소득은 일자리와 연계되기 쉬우나, 일자리는 경제정책으로 복지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기복지기준선의 경우에도 소득영역은 빈곤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용임
 - 돌봄영역은 전통적 복지영역으로 i)아동, ii)노인, iii)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 적정기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역임
 - 건강영역은 일상적 생활영위를 넘어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안정된 심리상태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정신 및 신체건강 모두를 포함한 영역임
 - 교육영역은 인구고령화 및 지속적 배움에 대한 열망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영역임 (교육청 업무 제외)
 - 주거영역은 단순히 잠자리를 넘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영역임
- 아래 표는 남양주시 복지기준선의 5대 영역(7대 세부영역)과 정책목표, 관련된 주요지표 등을 제시한 것임
 - 영역별 정책목표는 경기복지기준선 및 기존연구, 그리고 중앙정부 등의 정책목표와 관련된 것임

- 주요 지표는 앞서 지역주민욕구조사 등 실태조사, 사회보장지표, 행정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현재 남양주시에서 고려해야 할 지표를 선정한 것임

〈표 Ⅲ-3〉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영역별 정책목표 및 주요지표

구분		정책목표	주요 지표
소득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상대빈곤율, 사각지대비율
돌봄	아동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드림스타트 이용 만족도, 보육·유아교육시설 만족도
	노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노인돌봄 이용률, 노인관련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장애인		장애인돌봄 이용률, 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이용자 수, 장애인 거주시설수,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건강		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와 건강생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	우울감 경험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교육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	평생교육 관련 1만 명당 기관수·프로그램 수·교강사 수, 평생학습 참여율
주거		누구나 거처가 없거나 불안정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주거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3. 주요 영역별 복지기준선

1) 소득영역

□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으로 남양주의 경우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대빈곤율과 사각지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중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하며, 사각지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비율임
- 경기도 전체 상대빈곤율은 8.8%이며, 남양주 상대빈곤율은 9.9%로 경기보다 1.1% 높은 상황임
 - 특히, 권역별로 보면, 동부권역의 상대빈곤율이 11.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부권역은 7.9%로 경기도 평균상대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사각지대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5.2%, 남양주는 6.7%로 높게 나타나고, 4권역 모두 경기도 전체보다 사각지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남양주 사각지대비율은 6.7%, 북부 6.2%, 동부 7.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상대빈곤율이 7.9%로 낮았던 남부권역에서도 사각지대 비율은 경기도 전체 5.2%보다 높은 5.4%로 나타나고 있음
 - 남양주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인구의 급속한 증대, 지역별로 지가 상승이 나타남. 이런 현상으로 인해 차상위 등의 저소득층은 증대하지만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4개 권역 모두의 사각지대 비율이 경기도 전체 사각지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Ⅲ-4〉 상대빈곤율, 사각지대 비율

(단위: 가구수, %)

구분	상대빈곤율		사각지대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수급빈곤가구비율
경기도 전체	503,289	8.8%	295,376	5.2%
남양주 전체	28,812	9.9%	19,317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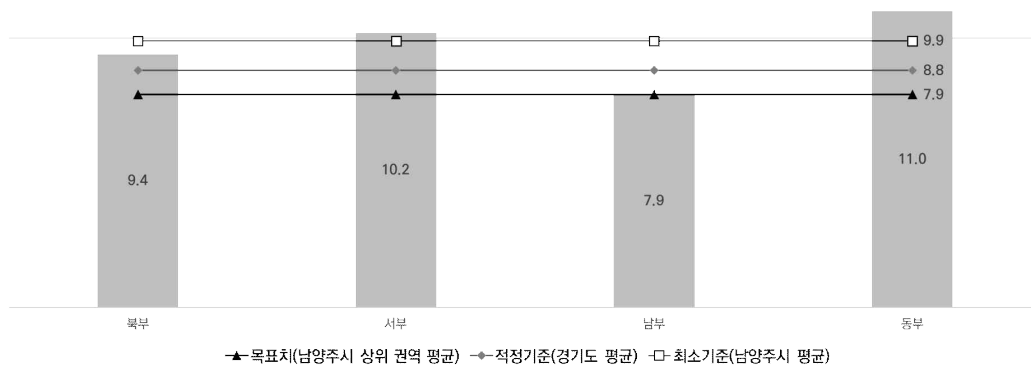
북부	9,230	9.4%	6,097	6.2%
서부	6,732	10.2%	4,478	6.8%
남부	2,900	7.9%	1,959	5.4%
동부	9,756	11.0%	6,784	7.6%

- 따라서 남양주시 소득영역의 기준선은 상대빈곤율의 경우 남부권역의 상대빈곤율을 목표치로 설정하되 사각지대비율의 경우 적정기준인 경기도 평균을 목표로 설정함
 - 추가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남양주시의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드림스타트센터와 보육·유아교육시설도 서브 기준선으로 설정
 - 목표치는 남양주시 내 권역별 최고 권역의 값이며, 적정기준은 경기도 평균, 최저기준은 남양주시 평균으로 설정

□ 복지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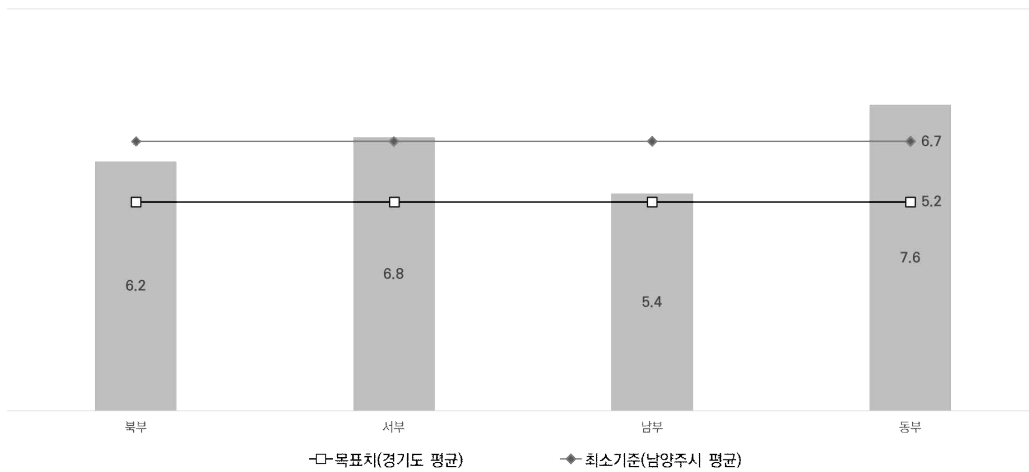
- 소득영역 중 상대빈곤율의 기준선의 목표치는 남양주 남부권역의 7.9%를 하고, 적정수준은 경기도 평균인 8.8%로 설정함
 - 남양주 평균인 9.9%는 최소기준으로 선정하여 서부나 동부권역은 최소기준 이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Ⅲ-6〉 상대빈곤율 기준선



- 소득영역 중 사각지대비율의 경우 남양주 4개 권역 모두가 경기도 사각지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영역에 비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임
- 사각지대비율의 경우 목표값을 적정기준인 경기도 평균으로 선정해 사각지대비율 5.2%를 복지기준선으로 하며, 최소기준은 남양주시 평균인 6.7%로 선정함

〈그림 Ⅲ-7〉 복지사각지대 비율 기준선



2) 돌봄_아동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돌봄과 관련한 모든 세부부문에서 경기평균에 비해 이용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순위 또한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 지역주민육구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부문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경기도 내에서 27~28위 수준으로 최하위권임
 - 그러나 아동관련 사회보장지표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Ⅲ-5〉 아동돌봄 관련 시설 이용만족도

세부부문	경기평균		남양주시		최고시군	최고 시군과 격차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보육·유아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75.4	15	73.5	21	85.8	12.3
아이돌봄서비스	70.3	14	65.6	24	83.8	18.2
드림스타트센터	64.2	12	55.5	28	92.4	36.9
지역아동센터	66.9	11	59.0	27	77.1	18.1
초등돌봄교실	71.1	14	70.7	15	80.6	9.9
방과후학교	71.3	12	66.1	26	89.6	2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6.3	13	60.7	22	81.9	21.2
기타 (지자체 자체 서비스등)	66.5	15	59.6	27	79.0	19.4
전반적인 만족도	72.7	14	70.2	22	80.4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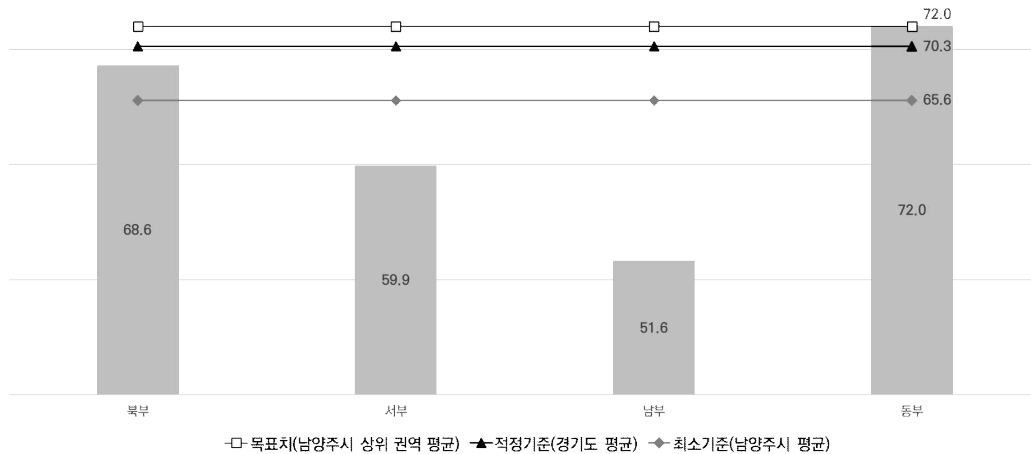
- 또한 남양주시 복지재정 특성 분석 결과 자체복지사업을 기준으로 보육·유아교육시설에 대한 공급자 지원도 부족한 상태
- 따라서 남양주시 아동돌봄의 기준선은 일차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

- 추가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남양주시의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드림스타트센터와 보육·유아교육시설도 서브 기준선으로 설정
- 목표치는 남양주시 내 권역별 최고 권역의 값이며, 적정기준은 경기도 평균, 최저기준은 남양주시 평균으로 설정

□ 복지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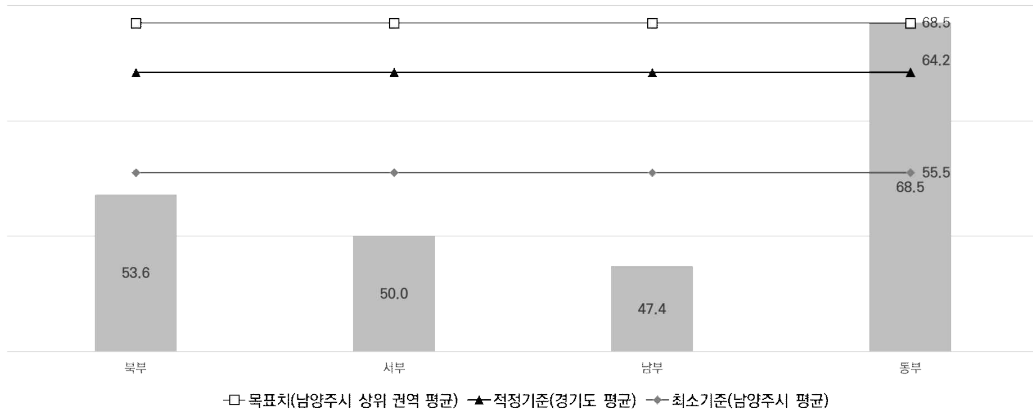
-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향후 72.0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65.6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III-8〉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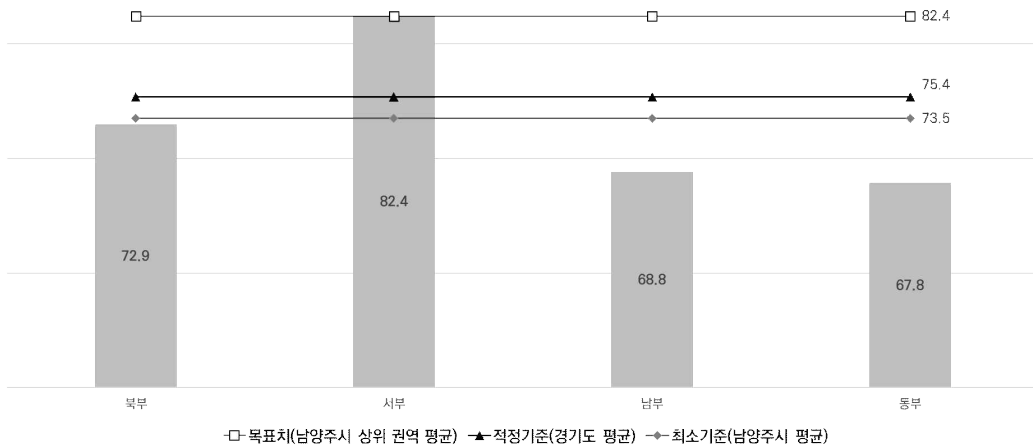
- 드림스타트 이용만족도는 향후 68.5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55.5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9〉 드림스타트 이용 만족도 기준선



- 보육·유아교육시설 만족도는 향후 82.4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73.5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10〉 보육·유아교육시설 만족도 기준선



3) 돌봄_노인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돌봄과 관련한 모든 세부부문에서 경기평균에 비해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순위 또한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 가사지원서비스 이용률은 경기도 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동 및 외출지원 서비스 또한 최고시군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부족, 작은 노인복지관 등 부족한 노인관련 인프라와 함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측면에서도 장기요양(시설급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내 하위권에서 속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지표 상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및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또한 부족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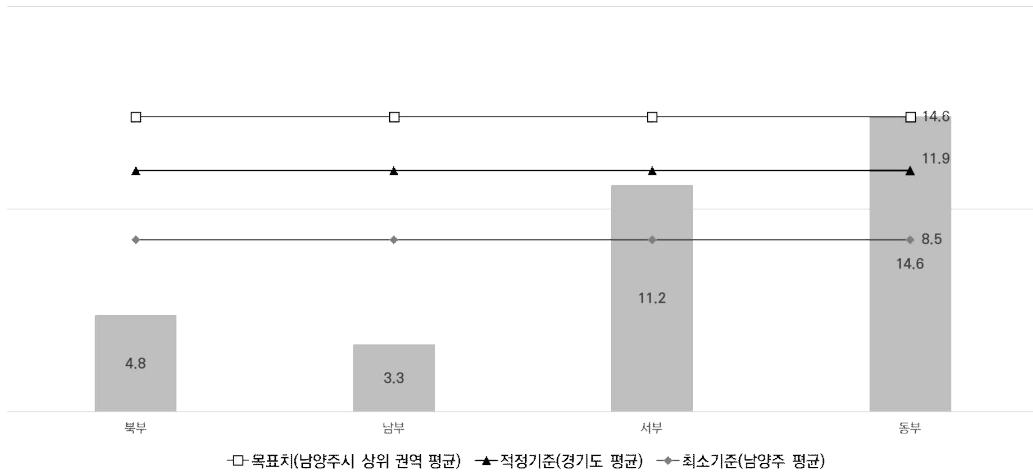
〈표 III-6〉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부문		경기평균		남양주시		최고 시군	최고 시군과 격차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이용률	개인위생 관리 지원 서비스	11.1	12	7.4	20	35.4	28.0
	가사 지원 서비스	11.6	16	5.0	32	26.9	21.9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10.9	14	8.2	19	40.6	32.4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12.3	15	7.7	22	36.2	28.5
	돌봄 비용 지원 서비스	13.7	15	14.1	14	36.0	21.9
만족도	장기요양(시설급여)	69.8	12	74.0	7	84.9	10.9
	장기요양(재가급여)	72.0	19	67.8	22	89.0	21.2
	노인맞춤돌봄	73.0	12	71.6	20	94.7	23.1
	전반적인 만족도	72.7	15	69.7	23	94.4	24.7

□ 복지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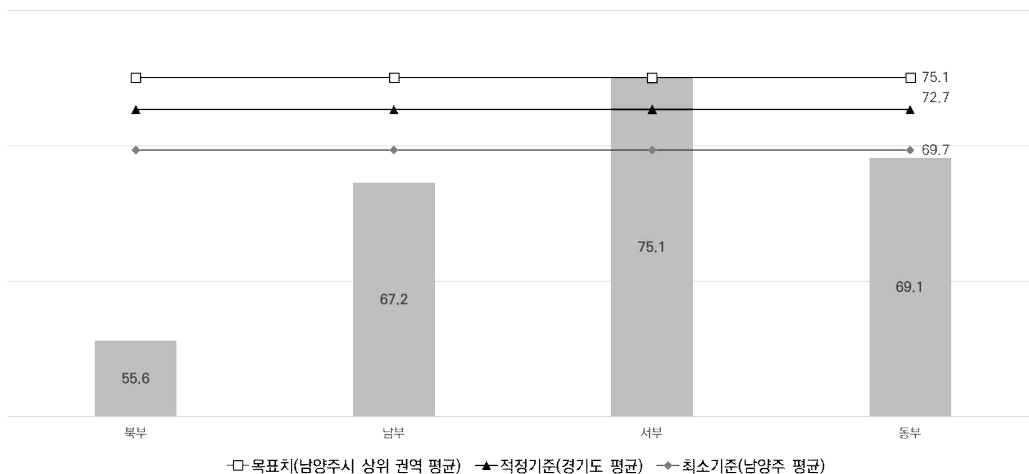
-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향후 14.6%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8.5%)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11〉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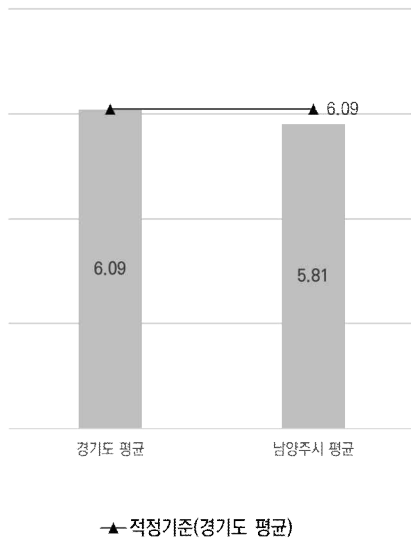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향후 75.1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69.7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12〉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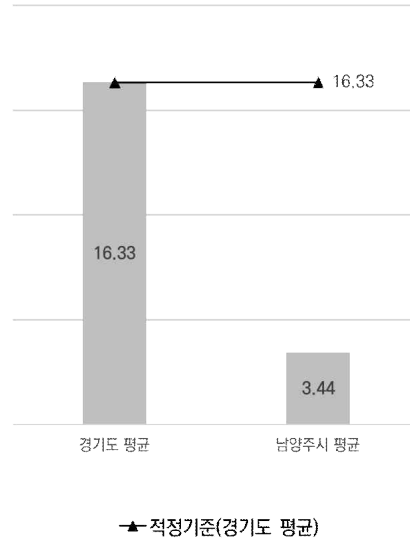


- 추가적으로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적정기준(6.09개)을 목표로 하며,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는 적정기준(16.33명)을 목표로 함
- 권역별로 구분하여 기준선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는 적정기준만을 제시하며, 이는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그림 Ⅲ-13〉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기준선



〈그림 Ⅲ-14〉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기준선



4) 돌봄_장애인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돌봄과 관련한 모든 세부부문에서 경기평균에 비해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순위 또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이용률은 경기도 내에서 하위 2등으로 매우 낮고, 이동 및 외출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이용률은 경기도 내 순위가 29위로 최하위 수준임
 - 특히 최고시군과의 격차는 응급상황 대처(71.2%), 이동 및 외출 지원(65.8%) 등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측면에서도 모든 세부부문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서 속하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29위), 전반적 만족도(28위) 등 경기도 내에서 순위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최고 시군과의 격차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37.1점), 장애인활동지원(24.6점) 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지표 상 장애인과 관련하여 시설부족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복지사업을 기준으로도 경기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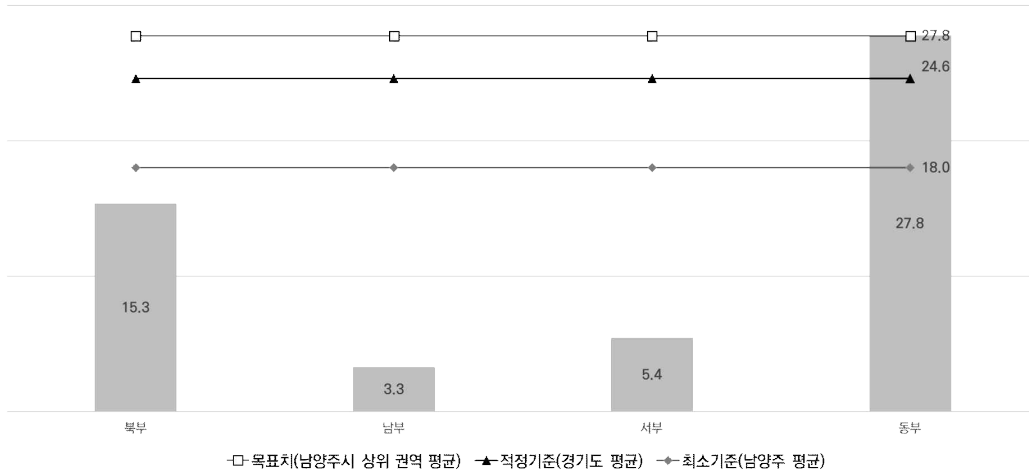
〈표 Ⅲ-7〉 장애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부문		경기평균		남양주시		최고 시군	최고 시군과 격차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이용률	개인위생 관리 지원 서비스	23.3	15	10.5	23	44.4	33.9
	가사 지원 서비스	23.8	12	7.4	31	52.5	45.1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29.7	13	9.9	29	65.8	55.9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24.0	12	6.2	29	71.2	65.0
	돌봄 비용 지원 서비스	29.0	12	19.0	23	51.1	32.1
만족도	장애인활동지원	73.2	15	63.7	29	88.3	24.6
	발달장애인주간활동	69.1	16	62.9	25	100	37.1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	65.2	16	60.4	22	79.2	18.8
	전반적인 만족도	71.7	16	63.9	28	85.3	21.4

□ 복지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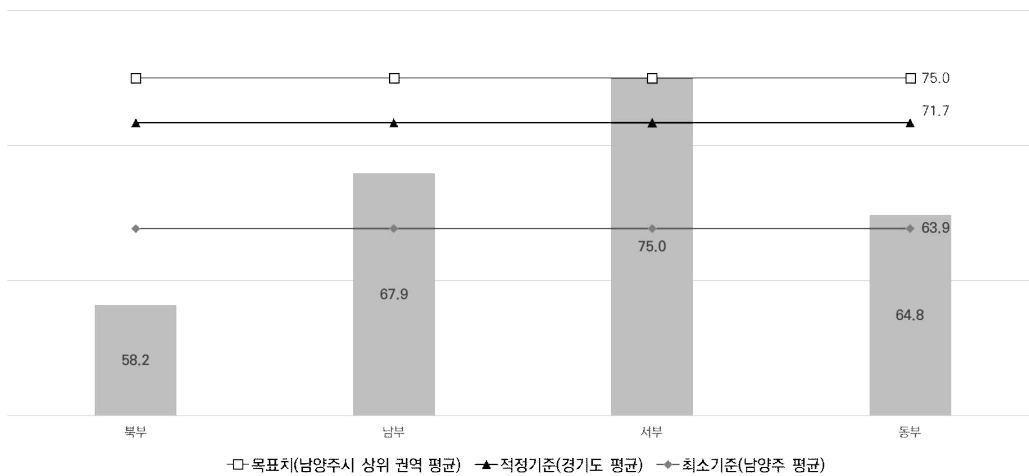
- 장애인돌봄 이용률은 향후 27.8%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18.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III-15〉 장애인돌봄 이용률 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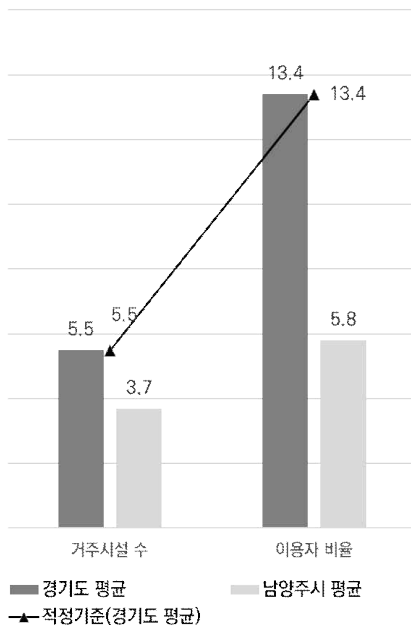
- 장애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향후 75.0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63.9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III-16〉 장애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 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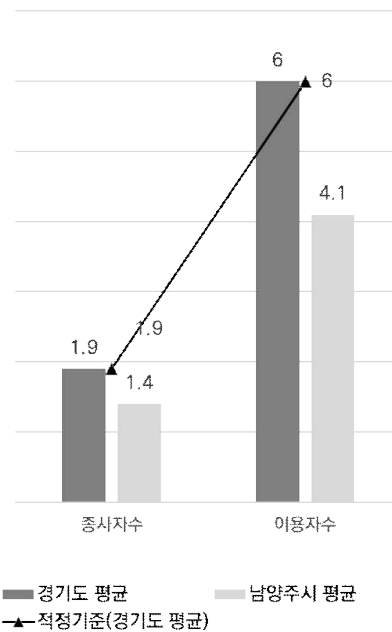


- 추가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정기준(5.5개)을 목표로 하며,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는 적정기준(16.33명)을 목표로 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종사자는 적정기준(1.9명)을 목표로 하고, 이용자는 적정기준(6.0명)을 목표로 함

〈그림 Ⅲ-17〉 장애인 거주시설 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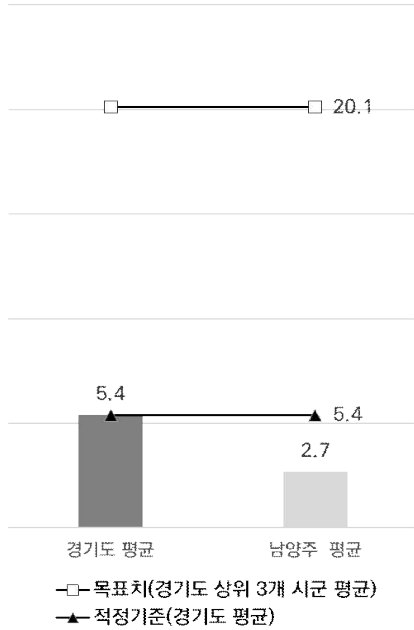


〈그림 Ⅲ-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이용자 수 기준선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종사자는 적정기준(5.4명)으로 하고, 목표치 (20.1명)를 목표로 함

〈그림 Ⅲ-19〉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기준선



5) 건강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및 경기도에 비해 높은 우울감(정신건강), 높은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신체건강) 등 건강수준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중앙값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시가 다소 높은 수준이나, 도내 순위는 20위로 안 좋은 상황임
 - 전국 최저와 중앙값 간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과 남양주의 차이인 0.5%는 큰 격차로 볼 수 있음
 -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중앙값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25위 수준으로 나타남
 - 고위험 음주율은 연간음주율과 달리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다르며, 남성의 경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주 2회 이상, 여성의 경우 1회 평균 5잔 이상·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
 - 특히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최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비만율은 전국 중앙값(31.3%)과 경기도 평균(31.6%)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남양주는 33.5%로 다소 높은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여성(정신건강), 남성(신체건강)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별로도 차이가 존재

〈표 Ⅲ-8〉 우울 경험률,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단위: %, 순위)

구분		전국		경기도 평균		남양주	
		최고(최저)	중앙값	값	도내 순위 (총 32개)	값	도내 순위 (총 32개)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률	4.2	5.7	6.3	15	6.8	20
신체건강	고위험 음주율	6.6	10.9	10.8	12	19.8	25
	비만율	27.0	31.3	31.6	12	33.5	22

〈표 Ⅲ-9〉 우울 경험률,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연령 및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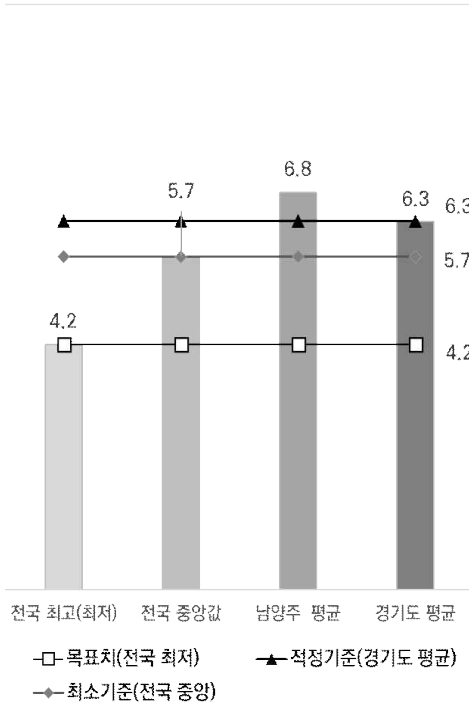
(단위: %, 순위)

구분		우울감 경험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남양주 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	남양주 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	남양주 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
전체		7.1	7.6	19.8	17.9	32.3	32.4
연령	19-29	6.9	3.7	12.2	11.5	28.0	27.1
	30-39	6.5	4.3	27.2	19.3	36.6	31.8
	40-49	6.9	8.3	21.7	20.7	31.4	32.6
	50-59	5.2	9.4	20.5	20.1	27.4	36.2
	60-69	8.9	8.4	21.8	17.4	37.9	34.8
	70 이상	10.3	13.5	9.0	12.5	36.0	31.2
성별	남자	5.7	3.4	26.1	24.6	43.2	39.9
	여자	8.5	11.8	11.9	10	21.7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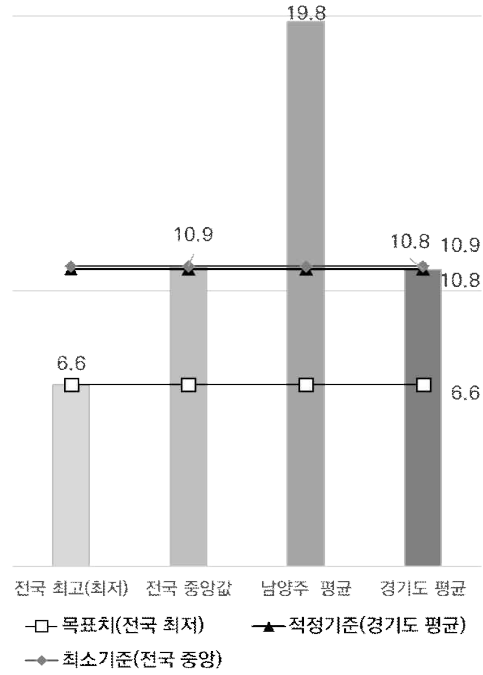
□ 복지기준선

- 건강관련 지표는 시군단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목표치는 전국 최저 지방정부, 적정기준은 경기도 평균, 최소기준은 전국 중앙값으로 설정
- 우울감 경험률은 향후 4.2%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전국 중앙값(6.3%)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연간음주자 고위험 음주율은 향후 6.6%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전국 중앙값(10.9%)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비만율은 향후 27.0%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전국 중앙값(31.3%)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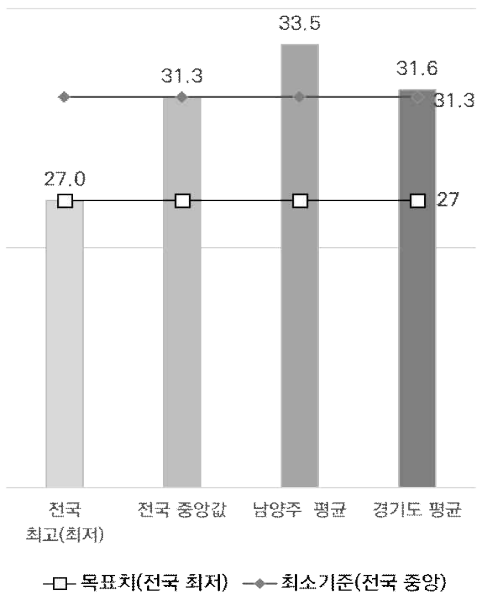
〈그림 Ⅲ-20〉 우울감 경험률



〈그림 Ⅲ-21〉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기준선



〈그림 Ⅲ-22〉 비만을 기준선



6) (평생)교육

□ 현황 및 문제점

-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족한 시설 및 인프라(기관, 프로그램, 강사 등)뿐 아니라 인지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임
 - 2021년 사회조사 결과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 인지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 75.9%로 나타나고 있으며,
 - 평생교육 사회보장지표 수준 또한 경기도 평균과도 격차가 상당하며, 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표 III-10〉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 인지도

(단위: %)

구분		매우 잘 안다	조금 잘 안다	보통	조금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1.0	4.4	18.7	20.7	55.2
연령구분	15~19세	2.1	7.5	20.6	21.8	48.0
	20~29세	0.3	4.3	17.8	20.1	57.5
	30~39세	0.7	3.1	16.9	21.4	57.9
	40~49세	0.9	5.7	21.3	19.7	52.4
	50~59세	1.0	3.2	24.6	21.4	49.9
	60세 이상	1.4	3.6	13.0	20.5	61.5

- 이에 비해 지역발전을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양주 전체 64.6%로서 시민의 평생교육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표 Ⅲ-11〉 남양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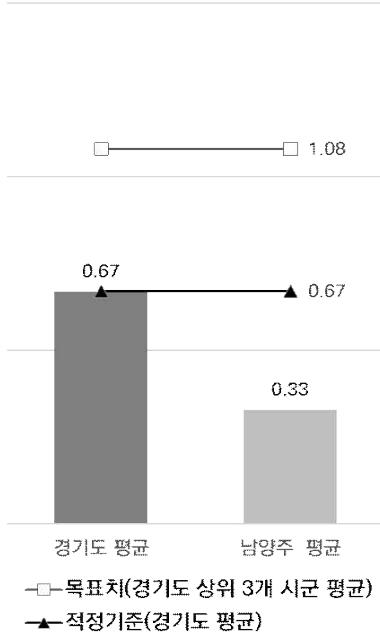
(단위: %)

지역	중요도	지역	중요도
남양주평균	64.6	수동면	71.3
와부읍	58.6	조안면	75.7
진접읍	49.2	호평동	58.1
화도읍	66	평내동	61.3
동부	60.1	금곡동	66.9
진건읍	68.3	양정동	77.1
오남읍	73.7	다산1동	67.9
퇴계원읍	72.3	다산2동	76.4
별내면	57.8	별내동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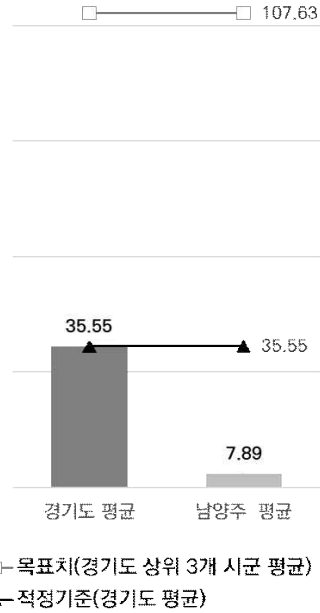
□ 복지기준선

- 평생교육관련 지표는 시군단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목표치는 경기도 내 상위 3개 시군의 평균, 적정기준은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 인구 1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향후 1.08개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경기도 평균(0.67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1만명당 프로그램 수는 향후 107.63개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경기도 평균(35.55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1만명당 교강사 수는 향후 16.1명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경기도 평균(10.24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평생학습 참여율은 향후 72.2%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경기도 평균(19.1%)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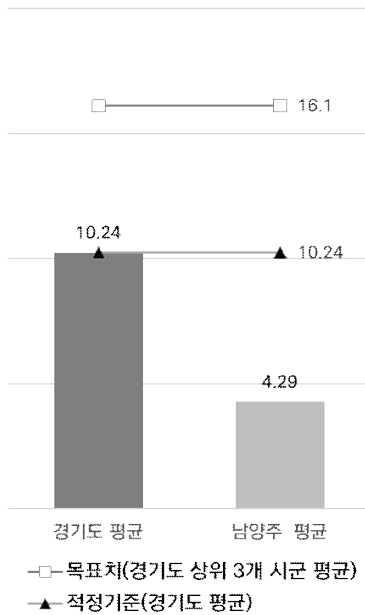
〈그림 Ⅲ-23〉 1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기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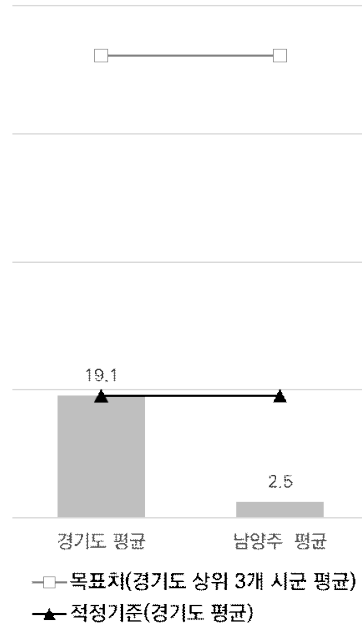
〈그림 Ⅲ-24〉 1만명당 프로그램 수 기준선



〈그림 Ⅲ-25〉 1만명당 교강사 수 기준선



〈그림 Ⅲ-26〉 평생학습 참여율 기준선



7) 주거

□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으로 경기평균에 비해 주거환경의 어려움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읍면동 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주거환경 어려움은 화장실, 주방시설, 위생상태, 도배·장판, 층간방음, 냉난방, 전기·가스시설, 상하수도 등의 열악정도와 지붕, 벽·담장 노후,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을 종합하여 산출

〈표 Ⅲ-12〉 경기도 주거환경 어려움 순위

(단위: 순위)

지역	평균	순위	지역	평균	순위
광명시	17.1	1	안양시	23.7	17
수원시	19.5	2	경기평균	24.1	18
김포시	19.8	3	용인시	24.1	19
안성시	20.3	4	가평군	24.4	20
구리시	20.4	5	이천시	24.5	21
평택시	21.0	6	양평군	25.1	22
고양시	21.3	7	남양주시	25.9	23
광주시	22.3	8	연천군	27.4	24
과천시	22.3	9	부천시	27.6	25
하남시	22.4	10	안산시	28.0	26
오산시	22.5	11	시흥시	28.0	27
의정부시	22.8	12	성남시	29.0	28
화성시	23.2	13	여주시	29.4	29
파주시	23.4	14	동두천시	31.4	30
의왕시	23.6	15	군포시	31.5	31
양주시	23.7	16	포천시	35.5	32

- 특히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주거환경의 어려움 정도는 최대 9.9배에 이르고 있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

〈표 Ⅲ-13〉 남양주시 주거환경 어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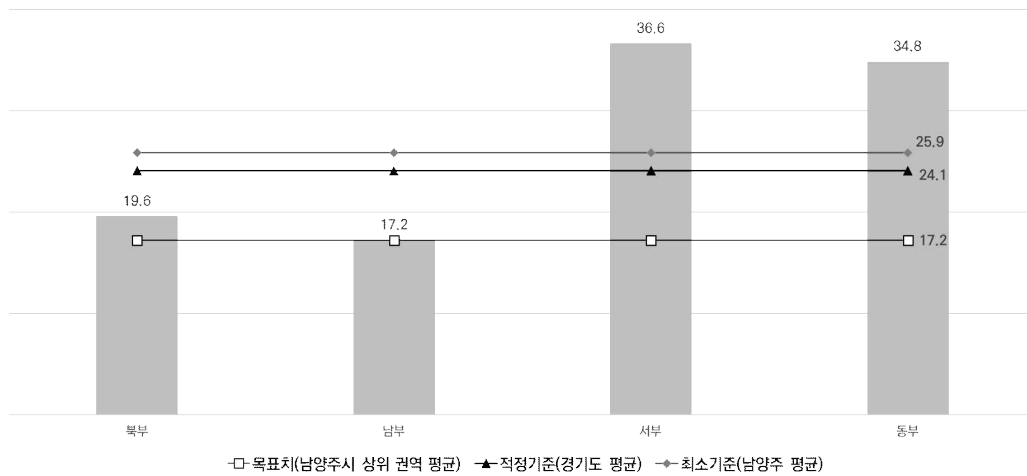
(단위: 점)

지역	어려움 정도(평균)
남양주 평균	25.9
와부읍	33.3
진접읍	9.6
화도읍	37.4
동부출장소	34.0
진건읍	31.3
오남읍	35.1
퇴계원읍	36.5
별내면	20.6
수동면	20.6
조안면	18.5
호평동	24.5
평내동	48.5
금곡동	47.7
양정동	43.3
다산1동	4.9
다산2동	16.2
별내동	20.4

□ 복지기준선

- 주거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정도는 향후 17.2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25.9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27〉 주거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기준선



IV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활용방안

IV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활용방안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자료

- 2022년은 법정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향후 4년간 남양주시의 복지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점임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적용기간은 2022년~2026년까지 4년으로 계획수립의 주체는 남양주시장이며, 주민 욕구조사를 통하여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의 의견수렴 후 소관부서와 협의, 제출한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거 논의 후 심의절차를 거쳐 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의 수요에 대한 측정이며, 이를 통해 분야별 추진전략, 전략과제 등을 발굴하는 것임
- 특히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전략과제)에 대해서는 목표수준을 제시하고, 성과지표를 작성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의 세부영역 및 지표별 복지기준선은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권역별 시범사업 실시의 근거자료

- 남양주시는 권역별로 사회보장 욕구 등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권역의 우선 및 중점 추진 복지영역을 설정하는데 근거로 활용
 -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부권역의 사회보장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모든 신규사업을 남부권역에 집중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권역별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우선 또는 중점 추진 영역을 구분해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
- 남양주시 지역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마련된 전략과제들은 사업에 따라 일시에 전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권역별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남양주시 보편적 사업의 경우와 달리 권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욕구 조사에 제시된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권역별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지표(문항)별 권역별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이를 활용하여 해당 전략과제에 대한 어려운 상황 지역(권역)을 구분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5대 영역 7개 세부영역에 대해서 권역별 우선·중점 추진영역을 설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남양주시 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영역을 우선·중점 추진영역으로 설정
 - 북부권역은 노인 및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서부권역은 주거내부환경과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의 향상과 함께 신도시 개발로 인한 권역내 소득편차(상대빈곤율 및 사각지대 비율)를 해소하는 것을 중점 추진
 - 남부권역은 남양주시 내에서 사회보장(복지)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선·중점 추진영역은 노인 및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과 주거내부환경의 개선으로 볼 수 있음
 - 동부권역은 상대빈곤율과 주거내부환경 개선, 그리고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률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중점 추진 영역으로 제안

〈표 IV-1〉 남양주시 권역별 우선·중점 추진영역(예시)

권역	우선·중점 추진 영역	
	1순위	2순위
북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서부	주거내부환경 어려움,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상대빈곤율, 사각지대 비율
남부	노인 및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주거내부환경 어려움
동부	상대빈곤율, 주거내부환경 어려움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 남양주 자체 복지정책 설계 기준으로 활용

-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초자료와 함께 분석한 결과는 향후 남양주시 자체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남양주시의 빈곤율 및 사각지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구간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의 규모 뿐 아니라 기준을 설정하는데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아래 표에서는 남양주시 권역별 중위소득별 기준금액, 가구와 그 비율이 제시되어 있음
 - 아래 자료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자료 중 남양주시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된 자료임
 - 남양주 중위소득은 548.8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1년 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이 487.6만원보다 61.16만원 높은 수치임
 -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해 4인 가족 중심의 중위소득을 산출하였음
 - 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경상소득은 세금이나 공공으로부터의 이전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시장소득을 의미함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보다 중위소득이 높음. 즉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기준 중위소득 보다 높음
 - 남양주시 중위소득은 548.7만원인 반면, 경기도 중위소득은 566.8만원으로 남양주보다 20만원 가까이 높음

- 여러 분야 복지기준선에서 나타났듯이 남양주가 경기도 전체 보다 저소득취약계층 비율이 높다보니 중위소득 역시 경기도보다 낮은 상황임

〈표 IV-2〉 중앙정부, 경기도, 남양주시 중위소득 비교

구분	중앙정부 기준중위소득	경기도 중위소득	남양주시 중위소득
금액	487.6만원	566.8만원	548.8만원
기준	공적이전소득을 고려한 전국단위 기준중위소득	경상소득으로 계산한 경기도 전체 중위소득	경상소득으로 계산한 남양주시 중위소득

-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는 전체 남양주시 가구의 9.9%를 차지하고, 중위소득 80%이하의 남양주시 가구의 3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50%이하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기준선임.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는 전체 남양주 가구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서부권역이 6,732가구, 동부권역이 9,756가구로 나타나고 있음.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전체 남양주 가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고,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전체 남양주시 가구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보면, 중위소득 60%이하까지는 동부권역에 가구수가 많은데, 중위소득 70%~80%의 경우에는 북부권역에 해당 가구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IV-3〉 남양주시 권역별/중위소득구간별 가구수 및 비율

구분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70%이하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총계	28,617	9.9%	44,842	15.5%	60,409	20.8%	90,715	31.3%
북부	9,230	9.4%	14,063	14.3%	20,902	21.3%	33,144	33.7%
서부	6,732	10.2%	11,328	17.1%	14,786	22.3%	21,710	32.7%
남부	2,900	7.9%	4,743	13.0%	6,278	17.2%	10,263	28.0%
동부	9,756	11.0%	14,709	16.6%	18,444	20.8%	25,598	28.8%

- 이렇게 각 기준에 따른 가구수는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사업규모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

-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특정 제도를 설계할 때 기준을 설정하는데에도 복지기준선이 활용될 수 있음
 - 아래표는 위의 중위소득비율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에 의하면,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는 102.9만원, 중위소득 80%는 164.6만원으로 나타남. 따라서 남양주시 1인가구 대상의 사업을 설계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함

〈표 IV-4〉 남양주시 중위소득구간별/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70%	중위소득 80%
1인가구	102.9만원	123.4만원	144.0만원	164.6만원
2인가구	173.8만원	208.5만원	243.2만원	278.0만원
3인가구	224.2만원	269.0만원	313.8만원	358.7만원
4인가구	274.4만원	329.3만원	384.1만원	439.0만원
5인가구	324.0만원	388.8만원	453.5만원	518.3만원
6인가구	373.0만원	447.6만원	522.1만원	596.8만원
7인가구	421.9만원	506.3만원	590.5만원	675.0만원

□ 향후 ‘남양주시복지재단’ 고도화의 밑거름

- 현재 남양주시는 ‘21년 남양주형 복지모델 구축, 상생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체계 구축 등을 위해 ‘남양주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 남양주복지재단의 비전은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남양주 복지모델 마련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①협력(주민 중심 정책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②전문(복지정책연구조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③만족(one-stop 서비스, 맞춤형서비스체계 구축), ④책임(투명한 조직운영, 소통·협력하는 조직문화) 등 전략과제를 수립
 - 전략방향은 ①남양주형 복지모델 구축, ②상생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③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체계 구축 등을 제시
- 향후 남양주시복지재단은 남양주 복지발전의 마중물로서, 남양주 복지모델의 핵심가치를 ‘남양주시 복지 균형발전’로 설정하여, ‘남양주 복지균형발전지원센

터'의 기능으로 고도화 할 수 있음

- 법령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의 균등발전은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담당할 조직 및 체계는 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지역(기초정부)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설정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으며, 현재 제시되어 있는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전략체계도에 따라 담당하는 것이 가능
- 전국 및 광역단위에서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한 '복지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정립을 통해 남양주시 복지발전(고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문헌

- 경기복지재단(202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경기복지재단.
- 남양주시(2019). 『2019년 제8회 남양주시 사회조사』. 남양주시.
- 민효상·신동길(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오민수·이은아·김주연(2021). 『2021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경기복지재단.
- 윤성원·양재진(2019), “한국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자체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가?: 2017년 지방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초연구”. 『사회과학논집』, 50(2):117-140.

부록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설문지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D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시군구

안녕하십니까?

○○○시군구에서는 「제5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수립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시군구 전반의 사회문제를 확인하여 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와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시군구 사회보장부문 정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시군구 사회보장 정책 수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중이라도 귀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응답을 중단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시군구청장 ○○○

조사원 기입란

주소	시 도 번 호		11) 서울 26) 부산 27) 대구 28) 인천 29) 광주 30) 대전 31) 울산 36) 세종 41) 경기 42) 강원 43) 충북 44) 충남 45) 전북 46) 전남 47) 경북 48) 경남 50) 제주			
	시군구 번 호					☞ 리스트 참조해 세 자릿수 기입
	읍면동 번 호					☞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기입
	세부주소	도 로 명 (신)	☞ 세부주소까지 도로명 주소를 우선으로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 지번으로 기입 _____ (시·군·구) _____ (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지 번 (구)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도로명) (세부주소) _____			

방문시기			방문결과		미완사유	
1차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코드 ① 비해당(완료) ② 낮은 귀가 ③ 장기 출타 ④ 부재중(원인 미파악) ⑤ 일부 문항 미완 ⑥ 조사 거부	
2차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		
3차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		
최종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		

조사원 이름	(인)	검증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지도원 확인	(인)
-----------	-----	-----------	-----------	-----------	-----

A. 가구 일반현황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연락처	- -

A1 가구 일반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아래 <보기>의 응답코드를 참조해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은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 등으로 이어져 있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 학업(학생), 유학, 군복무(군인), 입원, 요양(노인 등), 해외 및 지방근무를 위해 집을 떠나 있는 경우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사실혼 등)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입주도우미 등 함께 살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접원 아래 해당 문항의 응답코드 <보기>를 참고하여 표의 공란에 응답자의 응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합니다.

A1-1 총 가구원 수(응답자 본인 포함 1명 이상)							명
-------------------------------	--	--	--	--	--	--	---

A1-2 가구원 번호	A1-3 가구주와 관계	A1-4 성별	A1-5 만 연령	A1-6 교육수준 (최종학력기준)	A1-7 경제활동 상태 (지난 3개월)	A1-8 장애 유형	A1-9 장애 정도
1 (응답자 본인)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				
7			세				
8			세				
9			세				
10			세				
응답 코드 <보기>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사실혼 등 포함, 이하 동일)	① 남 ② 여 ③ 기타 ④ 밝히지 않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2021.07.31. 기준)	① 미취학 (만5세이하)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일용 근로자 ③ 고용주/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일시휴직 ⑥ 구직활동	① 신체적 장애 ② 정신적 장애 ③ 모름 ④ 해당없음	(2019년 6월 이전)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③ 비혼자녀 ④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⑤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⑥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⑦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⑧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기타(직접 내용 기입)	연령조건표 참조	⑥ 대학(4년제 미만) ⑦ 대학교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 학력 기재	⑦ 주무 ⑧ 학업 ⑨ 무직 ⑩ 해당없음 (만14세이하)	중복장애의 경우는 주장에 기준으로 응답 (장애정도포함)	⑤ 5급 ⑥ 6급 (2019년 7월 이후) ⑦ 심한장애 ⑧ 심하지 않은 장애 ⑨ 모름 ⑩ 해당없음
--	----------	---	---	--------------------------------	---

☞ 면접원 - 모든 가구원 수는 응답자를 포함한 숫자로 기재해 주세요.
- 위의 가구원 현황표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A1-10 아동(만 17세 이하) 가구원 수	명
A1-11 노인(만 65세 이상) 가구원 수	명
A1-12 장애인 가구원 수(미등록 포함)	명

A2 귀 닥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 면접원 위의 가구원 현황표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귀 닥의 상황	예	아니오	비해당
A2-1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A2-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중에 출생시 국적이나 현재 국적이 외국인 가구원이 있다. (다문화 가족)	☐ ①	☐ ②	☐ ③
A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 ①	☐ ②	☐ ③
A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생계급여 · 의료급여 비해당),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 ①	☐ ②	☐ ③

A3 귀 닥은 현재의 거주지역(해당 시군구)에서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 면접원 2021.7.31.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 해당합니다.

	년		월부터
---	---	---	-----

B. 사회보장 관련 욕구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 B영역에서는 사회보장영역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관련한 욕구를 1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합니다.
 - 해당 사회적 위험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 해당 위험을 가족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외부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구분	영역	응답 대상	해당 페이지
B1	아동돌봄	만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응답	 p.5
B2	노인돌봄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	 p.6
B3	장애인돌봄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미등록 포함)	 p.7
B4	정신건강	모든 가구 응답	 p.8
B5	신체건강	모든 가구 응답	 p.9
B6	기초생활유지	모든 가구 응답	 p.10
B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모든 가구 응답	 p.11
B8	보호·안전	모든 가구 응답	 p.12
B9	교육	①, ②, ③: 초·중·고 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 ④: 모든 가구 응답	 p.13
B10	고용	①, ②, ③, ④, ⑤: 지난 1년간 구직활동(창업) 경험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 ⑥, ⑦, ⑧, ⑨: 지난 1년간 유급노동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	 p.14
B11	주거	모든 가구 응답	 p.15
B12	법률 및 권익보장	모든 가구 응답	 p.16
B13	문화여가	모든 가구 응답	 p.16

 응답 대상 확인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

B1. 아동 돌봄

- 1) 양육비 부담(아동의 양육과정 및 돌봄서비스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 2)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돌봄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어려움)
- 3)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직업 등의 이유로 아동돌봄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 4)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아동 양육 및 발달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부족)
- 5)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상 문제로 인한 어려움)

☞ 면접원

B1. 영역은 만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아래 B1-1, B1-2 문항은 아동돌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1 귀 닥은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가?

B1-2 귀 닥은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1 어려움 경험 정도					B1-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아동 양육 부담	① 양육비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 시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 술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면접원

아래 B1-3, B1-4, B1-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3~5 아동 돌봄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1-3 인지 여부		B1-4 이용 경험		B1-5 향후 이용 의향	
	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양육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1-A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⑥ 비해당
① 보육·유아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② 아이돌봄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③ 드림스타트센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④ 지역아동센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⑤ 초등돌봄교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⑥ 방과후학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⑦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⑧ 기타(지자체 자체 서비스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⑨ 전반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B2. 노인 돌봄

- 1)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세수, 목욕, 구강관리, 용변처리 등의 어려움)
- 2) 가사활동의 어려움(집안일, 식사준비, 생활필수품 구매 등의 어려움)
- 3)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동 및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 재난 관련 대처 어려움(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 5)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심한 출혈, 심장 마비, 의식 상태 변화 등 건강 관련 응급상황)
- 6) 신체적·정신적 부담(노인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신체·정신적 어려움)
- 7) 돌봄비용 부담(노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8)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돌봄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어려움)

면접원

B2. 영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노부부 가구 등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아래 B2-1, B2-2 문항은 노인 돌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 B2-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귀댁은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B2-2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2-1 어려움 경험 정도					B2-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일상생활 의 어려움	①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가사활동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④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돌봄 부담	⑥ 신체적·정신적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돌봄비용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2-3, B2-4, B2-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2-3~5 노인 돌봄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이나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2-3 인지 여부		B2-4 이용 경험		B2-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개인위생 관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가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⑤ 돌봄 비용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2-A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⑥ 비해당
① 장기요양(시설급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② 장기요양(재가급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③ 노인맞춤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④ 기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⑤ 전반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B3. 장애인 돌봄

- 1)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용변처리, 목욕, 구강관리 등의 어려움)
- 2) 가사활동의 어려움(집안일, 식사준비, 생활필수품 구매 등의 어려움)
- 3)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동 및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 재난 관련 대처 어려움(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 5)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심한 출혈, 심장 마비, 의식 상태 변화 등 건강 관련 응급상황)
- 6) 신체적·정신적 부담(장애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신체·정신적 어려움)
- 7) 돌봄비용 부담(장애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8)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돌봄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어려움)

면접원 B3. 영역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미등록 포함) 응답합니다. (장애인 단독가구 등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아래 B3-1, B3-2 문항은 장애인 돌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3-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B3-2 귀댁은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3-1 어려움 경험 정도					B3-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일상생활 의 어려움	①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가사활동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④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돌봄 부담	⑥ 신체적·정신적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돌봄비용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장애아동 돌봄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3-3, B3-4, B3-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3-3~5 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이나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B3-3 인지 여부		B3-4 이용 경험		B3-5 향후 이용 의향	
	① 앞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가사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⑤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⑥ 장애인돌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3-A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⑥ 비해당
① 장애인활동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② 발달장애인주간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③ 청소년발달장애 학생방과후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④ 기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⑤ 전반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B4. 정신건강

- 1) 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진단받지 않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
- 2)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진단받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 3)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 4)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자살생각, 자살 시도, 유가족 문제로 인한 어려움)
- 5)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안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해롭거나 위험한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

면접원 아래 B4-1, B4-2 문항은 정신건강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4-1 귀 닥에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B4-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4-1 어려움 경험 정도					B4-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 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4-3, B4-4, B4-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4-3~5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4-3 인지 여부		B4-4 이용 경험		B4-5 향후 이용 의향	
	① 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⑤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5. 신체건강

- 1)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중증 및 만성질환(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통증, 신체적 기능 저하 등)
- 2)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질병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영양 관리, 금연, 절주 등의 관리)

면접원 아래 B5-1, B5-2 문항은 신체건강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5-1 귀 닥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하셨습니까?

B5-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5-1 어려움 경험 정도					B5-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5-3, B5-4, B5-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5-3~5 신체건강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5-3 인지 여부		B5-4 이용 경험		B5-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6. 기초생활 유지

- 1) 생계비 부족(식사, 의복 구입 비용 등의 부족)
- 2) 주거비 부족(임차료 납부의 어려움, 유지수선비의 부족 등)
- 3) 의료비 부족(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납부의 어려움 등)
- 4) 교육비 부족(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부족 등)
- 5) 냉난방비 부족(냉방비, 난방비 납부의 어려움 등)
- 6)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수입대비 과도한 지출, 부채/ 신용불량/압류 등)

면접원 아래 B6-1, B6-2 문항은 기초생활유지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6-1 귀 닥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B6-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6-1 어려움 경험 정도					B6-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기초 생활 해결의 어려움	① 생계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의료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교육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냉난방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6-3, B6-4, B6-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6-3~5 기초생활 유지와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6-3 인지 여부		B6-4 이용 경험		B6-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생계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주거비 지원(주택구입비 제외)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의료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교육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⑤ 냉난방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⑥ 가계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1)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가족간 갈등, 관계소원 및 단절)
- 2)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친인척, 이웃간 갈등, 관계 소원 및 단절, 소속 집단 내 관계의 어려움)

면접원 아래 B7-1, B7-2 문항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B7-1 귀 닥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가?

B7-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7-1 어려움 경험 정도					B7-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7-3, B7-4, B7-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7-3~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7-3 인지 여부		B7-4 이용 경험		B7-5 향후 이용 의향	
	① 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8. 보호 · 안전

- 1)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가족 구성원 간 학대, 폭력, 방임 등)
- 2)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친인척, 이웃, 소속 공동체 내에서의 학대, 폭력, 방임, 착취, 협박 등)

면접원 아래 B8-1, B8-2 문항은 보호·안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8-1 귀 닥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가?

B8-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8-1 어려움 경험 정도					B8-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8-3, B8-4, B8-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8-3~5 가족 내외로부터의 보호 · 안전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8-3 인지 여부		B8-4 이용 경험		B8-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가족 내 학대 · 폭력 대응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가족 외부의 학대 · 폭력 대응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9. 교육

- 1)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수리계산 능력, 그 외 학습 능력 부족 등)
- 2) 학업유지의 어려움(학업 흥미 상실, 교육비 과부담의 어려움)
- 3)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교우관계의 어려움, 사제관계의 어려움 등)
- 4) 평생교육의 어려움(평생교육 기회 부족 등)

면접원

B9 영역 ①~③은 초·중·고 재학생(대안학교 포함)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아래 B9-1, B9-2 문항은 교육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9-1 귀 닥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가?

B9-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9-1 어려움 경험 정도					B9-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학업의 어려움	①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학업유지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평생교육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B9 영역 ①~③은 초·중·고 재학생(대안학교 포함)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아래 B9-3, B9-4, B9-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9-3~5 교육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9-3 인지 여부		B9-4 이용 경험		B9-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평생교육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10. 고용

- 1)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일자리 발굴의 어려움, 일자리 수의 부족 등)
- 2) 취업·창업 정보 부족(채용공고 및 일자리 정보, 창업 정보 등 부족)
- 3)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자격증 취득비용, 학원비, 면접 준비 비용 등의 부족)
- 4) 창업자금 부족(창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의 어려움)
- 5) 나이·성별·장애로 취업 어려움(나이·성별·장애의 차별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 6)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사업장 여건변화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
- 7)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낮은 임금, 긴 근로시간,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어려움)
- 8)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
- 9)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면접원 B10 영역 ①~⑤는 지난 1년간 구직활동(창업) 경험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⑥~⑨는 유급노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아래 B10-1, B10-2 문항은 고용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0-1 귀 닥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B10-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0-1 어려움 경험 정도					B10-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취/창업의 어려움	①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취업·창업 정보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창업자금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고용유 지의 어려움	⑥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 거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 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10-3, B10-4, B10-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0-3 ~5 고용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10-3 인지 여부		B10-4 이용 경험		B10-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취/창업의 어려움	① 일자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취업·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고용유 자의 어려움	⑤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⑥ 근로조건·환경 개선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⑦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⑧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11. 주거

- 1) 화장실 열악(변기, 세면대, 목욕시설 등의 열악함)
- 2) 주방시설 열악(싱크대, 조리시설, 환기시설 등의 열악함)
- 3) 위생 상태 열악(악취, 벌레 등)
- 4) 도배·장판 열악(습기, 곰팡이 등)
- 5) 층간방음 열악(이웃 간 층간 소음 등)
- 6) 냉·난방 열악(보일러, 에어컨 등의 시설 부족 및 열악함)
- 7) 전기·가스시설 열악(낡은 전기 설비, 노후된 배관 등 전기 및 가스시설의 열악함)
- 8) 상하수도 열악(상하수도 시설 낙후 등)
- 9) 지붕노후(누수 등)
- 10) 벽·담 등 노후(균열 문제 등)
- 11)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단차, 돌출물, 모퉁이 등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면접원 아래 B11-1, B11-2 문항은 주거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1-1 귀하 집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B11-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1-1 어려움 경험 정도					B11-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치 않음	② 거의 경험치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주거 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① 화장실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주방시설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위생 상태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도배·장판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층간방음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냉·난방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전기·가스시설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상하수도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지붕노후(누수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벽·담 등 노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11-3, B11-4, B11-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1-3 주거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11-3 인지 여부		B11-4 이용 경험		B11-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주택개조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12 법률 및 권익보장

- 1)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혼, 파산/신용불량, 친권상실, 신분상실, 사고보상처리 등의 법률 관련 어려움)
- 2)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부당한 차별이나 착취, 인권침해로 인한 어려움)

면접원 아래 B12-1, B12-2 문항은 법률 및 권익보장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2-1 귀하께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B12-2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2-1 어려움 경험 정도					B12-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12-3, B12-4, B12-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2-3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12-3 인지 여부		B12-4 이용 경험		B12-5 향후 이용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법률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13. 문화·여가

- 1)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참여기회 부족, 문화여가시설 열악 등)
2)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참여기회 부족, 체육시설 열악 등)

면접원 아래 B13-1, B13-2 문항은 문화·여가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B13-1과 B13-2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가?

B13-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3-1 어려움 경험 정도					B13-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 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13-3, B13-4, B13-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3-3 문화·여가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13-4 인지 여부		B13-4 이용 경험		B13-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체육 활동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C.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 **면접원** 아래 C1, C2 문항은 사회보장 각 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시급성 및 이제까지의 정책 마련 노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C1 OO시·군·구가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의 시급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C2 OO시·군·구가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C1 정책의 시급성					C2 시군구의 노력 정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시급함	⑤ 매우 시급함	① 전혀 노력하지 않음	② 노력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노력함	⑤ 매우 노력함
① 아동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노인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장애인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정신건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신체건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기초생활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보호·안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고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주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법률 및 권익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⑬ 문화여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D. 생활 여건 및 지역 불균형

D1 다음은 귀 닥의 생활 여건(경제적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D1-1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 (2020.1.1.~2020.12.31.)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생활비와 총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항목						
가구 총소득	월평균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가구 총 생활비	월평균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D1-2 귀 닥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

D1-A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귀 가구가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_____만원
② 귀 가구가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_____만원

D1-B 귀 닥에서 지난 1년 간 경제적인 이유로(돈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① 있다	② 없다	③ 비해당
①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② 공과금(전기/수도/가스비) 또는 관리비를 못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③ 자녀의 공교육비(대학생 포함)를 못 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④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⑤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를 미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⑥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⑦ 문화여가를 즐기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⑧ 통신비를 연체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⑨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⑩ 대출금 및 카드값을 상환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⑪ 주거환경개선(누수 등)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D2 다음은 귀 닥의 주거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D2-1 귀 닥의 주거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⑥ 주택 이외의 거주

D2-2 귀 닥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⑤ 사글세/연세 ☐ ⑥ 일세 ☐ ⑦ 무상

D2-A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구분	금액
자가(현재 시세)	_____ 억 _____ 만원

D2-3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해당되는 곳에만 기입)

구분	금액
① 전세	전세보증금 _____ 억 _____ 만원
②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_____ 억 _____ 만원
	월 세 _____ 월 _____ 만원
③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월 세 _____ 월 _____ 만원

D3 다음은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 **D3** 의 경우 응답자 본인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D3-1 아래 제시되는 각 영역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영역	①	②	③	④	⑤
----	---	---	---	---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현재의 삶의 질	☐ ①	☐ ②	☐ ③	☐ ④	☐ ⑤

D4 다음은 지역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 원 **D4** 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D4-1 OO시군구가 OO 시도의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볼 때 얼마나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열악하다	열악하다	보통이다	살기 좋다	매우 살기 좋다

아래 제시되는 각 영역별로, OO시군구와 OO 시도 내 다른 지역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
D4-2 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현재 거주지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 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① 소득 및 자산 (거주 지역 주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주거 (주택 및 주변시설의 낙후 정도, 대중교통 편리성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일자리 (일자리 수, 일자리의 질, 임금 수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교육 시설 및 서비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설학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제공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의료시설 및 서비스 (종합병원, 병원/의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생활편의시설 (마트, 식당, 사우나, 미용실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문화·여가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	☐ ①	☐ ②	☐ ③	☐ ④	☐ ⑤

D5 다음은 다문화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D5-A 다른 문화적 배경(인종과 국적)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영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②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③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④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다	☐ ①	☐ ②	☐ ③	☐ ④
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E. 코로나-19와 생활 변화

E1 다음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귀댁의 변화와 해당 변화가 미친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면접원 E1 의 경우 가구원 전체를 고려하여 응답합니다.

E1-1 조사일 현재까지, 귀댁에 코로나-19의 확진자나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등으로 인한 자가 격리자 등이 있었습니까?

- ☐ ① 가구 구성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
- ☐ ② 가구 구성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으나,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이 있다.
- ☐ ③ 가구 구성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도, 자가격리된 사람도 없다.

E1-2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코로나-19 유행 이후 귀댁에는 다음 각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변화 없음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정신적 건강 관리(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 관리)가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신체적 건강 관리(중증 및 만성질환 관리, 규칙적인 신체 활동 등)가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대인관계나 사교적 활동(지인간 만남, 결혼식, 돌잔치 등)이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여행, 취미활동 등 문화여가 활동이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2인 이상 가구만 응답)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 내 안전 유지가 어려워졌다. (폭력, 학대 위협의 증가).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 가구만 응답) 실직·폐업, 가계 빚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만 응답) 휴교, 비대면 교육 전환 등으로 학습성적 유지 또는 증진이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응답)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관·휴교 등으로 아동에 대한 추가적 돌봄이 필요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 복지관·요양기관·주간보호 등의 휴관·휴업으로 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돌봄이 필요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E1-3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필요하 지 않음	② 필요하 지 않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 긴급돌봄 등 대면 돌봄서비스 확충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생계비, 생필품 지원 등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임대료 경감, 세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근로자 상병수당(유급병가)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재택근무 간접 노무비 지원 등 유연근무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확진자, 유가족, 격리자, 대응 인력 등을 위한 심리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지역주민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개인 위생 물품 공급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기타()	☐ ①	☐ ②	☐ ③	☐ ④	☐ ⑤